제2023-2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

선　　명 : 씨스타 5호

선박번호 : DHR-155301

항　　로 : 강릉-울릉(저동항)-독도

사업자명 : 씨스포빌(주)

사업자주소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길 30-80

위 선박은 운항관리규정의 심사절차에 따라 심사 완료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3년 3월 2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여객선 씨스타 5호
운항관리규정
(내항여객운송사업)

2023년 2월

씨스포빌 주식회사

[개정 이력]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 항목장	개정이유 및 내역
1	‘15.8.24.	전장	전면개정
2	‘17.3.30.	전장	전면개정
3	‘17.11.10.	제11조	안전관리책임자 근무체계변경
4	‘17.11.10.	제20,29,35,44조	해양경비안전서→해양경찰서
5	‘17.11.10.	제18조,제20조	통신업무개정
6	‘18.3.3.	제20조	통신업무개정
7	‘19.3.30.	제8조③	안전관리 조직도 변경
8	‘19.3.30.	제32조②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개정내용 반영한 문구수정
9	‘19.3.30.	붙임6	출항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변경
10	‘19.3.30.	제29조⑤의1	비상상황 연락기관 선장연락처변경
11	19.9.16	제2조제1호,제9조제4항,제11조제2항,제20조제2항,제29조제5항제5호,제32조제1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명칭 개정
12	19.9.16	제8조(안전관리조직)제3항	안전관리조직도 개정
13	19.9.16	제9조(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제2항	현실에 맞게 개정
14	19.9.16	제10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제5호,	현실에 맞게 개정
15	19.9.16	제10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권한)제13호～제15호	신설
16	19.9.16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근무체계)제1항,제11조제2항	현실에 맞게 개정
17	19.9.16	제12조(육상직원의 책임과 권한)제1항	현실에 맞게 개정
19	19.9.16	제12조(육상직원의 책임과 권한)제1항제7조	신설
20	19.9.16	제15조(채용·배승 관리)제1항	현실에 맞게 개정
21	19.9.16	제18조(항해업무)제3항제1호	[ ]사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 항목장	개정이유 및 내역
22	19.9.16	제18조(항해업무)제5항제4호	현실에 맞게 개정
23	19.9.16	제18조(항해업무)제5항제6호	중복 내용 삭제
24	19.9.16	제18조(항해업무)제6항제2호	신설
25	19.9.16	제18조(항해업무)제6항제5호	현실에 맞게 개정
26	19.9.16	제19조(입·출항 시 업무)제4항	현실에 맞게 개정
27	19.9.16	제20조(통신업무)제2항	가.나.다 항목 현실에 맞게 개정, 라.항목 신설
28	19.9.16	제22조(여객 준수사항의 전달)제3항제7호	해양긴급전화 119로 개정
29	19.9.16	제21조(여객업무)제2항	현실에 맞게 개정
30	19.9.16	제23조(화물관리)	표준운항관리규정에 따라 신설
31	19.9.16	제24조(복원성 및 복원성 기록관리)	표준운항관리규정에 따라 신설
32	19.9.16	제25조(위험물 등의 취급)	표준운항관리규정에 따라 신설
33	19.9.16	제29조(비상대응)제4항제1호～제6호	승무정원별 비상배치표 신설
34	19.9.16	제29조(비상대응)제5항	비상상황 연락처 개정
35	19.9.16	제29조(비상대응)제5항제5호	현실에 맞게 개정
36	19.9.16	참고자료 붙임 8	비상부서 배치표 개정
37	19.9.16	참고자료 붙임9	비상대응훈련 주기 개정
38	19.9.16	참고자료 붙임11	구명정→구조정 명칭 개정
39	19.9.16	구명동의→구명조끼	용어정리
40	20.11.25	제2조(용어의 정의)제1호	표준운항관리규정에 따라 개정
41	20.11.25	제2조(용어의 정의)제13호	신설
42	20.11.25	제5조(안전관리 방침 등의 이행·유지)	자구수정
43	20.11.25	제6조(임직원 및 선원의 책임과 의무)4호	자구수정
44	20.11.25	제8조(안전관리조직)제1항, 제3항	자구수정,안전관리조직도삭제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 항목장	개정이유 및 내역
45	20.11.25	제9조(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제2항,제4항	자구,용어수정
46	20.11.25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근무체계)제2항	문구수정,각주추가
47	20.11.25	제12조(육상직원의 책임과 권한)제1항제4호,5호	용어,자구수정
48	20.11.25	제13조(선장의 책임과 권한)제4항	문구정리
49	20.11.25	제15조(채용·배승관리)제1항	문구정리
50	20.11.25	제16조(인수인계)제5항	신설
51	20.11.25	제18조(항해업무)제2항,제3항제1호,제5항제1호	자구수정
52	20.11.25	제18조제3항제6호	신설
53	20.11.25	제18조제3항제9호	자구수정
54	20.11.25	제18조제6항제4호,제6호	자구수정
55	20.11.25	제18조의2(야간항해)	신설
56	20.11.25	제19조(입·출항시 업무)제3항,제5항	자구,문구정리
57	20.11.25	제21조(여객업무)제3항,제7항	용어수정
58	20.11.25	제22조(여객 준수사항의 전달)제3항	자구수정
59	20.11.25	제24조(복원성 및 복원성 기록관리)제1항,제2항	문구수정
60	20.11.25	제28조(사고처리시 준수사항)제5호,제6호	자구수정
61	20.11.25	제29조(비상대응)제5항제1호	선장연락처 삭제
62	20.11.25	제32조(선박의 안전점검)제1항,제3항	문구수정
63	20.11.25	제34조(선내 정비 및 점검 등)제5항	문구추가
64	20.11.25	제42조(여객선 이력장부관리)제1항제5호, 제6호	용어수정
65	20.11.25	제42조의2(여객선 안전정보공개)	신설
66	20.11.25	참고자료 붙임8 비상부서배치표 (승무원승선인원 6명,7명)	용어수정
67	20.11.25	참고자료 붙임9	운항관리실→운항관리센터 명칭개정

개정 번호	개정일자	개정 항목장	개정이유 및 내역
68	20.11.25	참고자료 붙임9	5),6),7) 신설
69	20.11.25	첨고자료 붙임17 안전관리조직도	신설
70	21.12.06	제17조(여객선 제원 및 운항구역 등)제1항	개정
71	21.12.06	제17조(여객선 제원 및 운항구역 등)제2항제3호	신설
72	21.12.06	제18조(항해업무)제5항,제1호,제3호	개정
73	21.12.06	제22조(여객 준수사항의 전달)제3항제9호	신설
74	21.12.06	제29조(비상대응)제4항 제1호-3호	이등항해사(5명) 이등항해사,이등기관사(6명) 이등항해사(A,B),이등기관사(7명) →항해사 또는 기관사 직책변경,
75	21.12.06	제29조(비상대응)제5항 3호	다.신설
76	21.12.06	참고자료 붙임8 비상부서배치표 (승무원승무인원 5-7명)	※직책 이등항해사(5명), 2등항해사,2등기관사(6명) 2등항해사(A,B),2등기관사(7명) →항해사 또는 기관사 직책변경, ※선장성명 삭제(승선인원5-7명) ※Remark부분 개정
77	21.12.06	참고자료 붙임11 여객선의 장비 및 시설현황	개정
78	21.12.06	참고자료 붙임17 안전관리조직도	대표이사 추가,개인연락처 삭제
79	23.2.27	제18조(항해업무)제5항제3호	관제구역 확대에 따른 수정
80	23.2.27	제18조(항해업무)제5항제4호	센터명 변경에 따른 수정
81	23.2.27	제19조(입출항 시 업무)제5항	여객선 안전관리지침(22.12.7) 개정내용 반영
82	23.2.27	제21조(여객업무) 제9항	연안여객선 개선된 승선권 및 여객명부 관리절차 반영
83	23.2.27	제22조(여객 준수사항의 전달)제3항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를 선내 게시토록 하는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내용 반영
84	23.2.27	제22조(여객 준수사항의 전달)제4항제1-5호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0조 제2항의 내용 반영하여 신설
85	23.2.27	제29조(비상대응)제5항제1호	동해해양경찰서 교통계 담당 번호 수정
86	23.2.27	제31조(안전교육 및 훈련 등)제4항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4]내용 반영

개정 번호	개정일자	개정 항목장	개정이유 및 내역
87	23.2.27	[붙임1]항로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별표5]연해구역 범위개정에 따른 강릉-울릉도 항로도 수정과 울릉-독도 항로도 수정
88	23.2.27	[붙임6]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개정내용에 따른 수정
89	23.2.27	[붙임9]비상대응훈련 주기 및 시나리오	선원법 시행규칙<별표4> 내용 반영
90	23.2.27	[붙임13]문서관리대장/문 서파일 목록표(갑판,기관,육상)	현실에 맞게 개정

목 차

제1장 목적 및 정의 ····· 1
제1조(목적) ····· 1
제2조(용어의 정의) ····· 1
제2장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 2
제3조(안전관리 목표) ····· 2
제4조(안전관리 방침) ····· 2
제5조(방침 등의 숙지 및 확인) ····· 3
제6조(임직원 및 선원의 책임과 의무) ····· 3
제3장 안전관리 조직 및 체계 ····· 4
제7조(최고경영자의 책임) ····· 4
제8조(안전관리조직) ····· 4
제4장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과 임무 등 ····· 5
제9조(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 5
제10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 ····· 6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근무체계) ····· 7
제12조(육상직원의 책임과 권한) ····· 8
제5장 선장의 책임과 권한 등 ····· 9
제13조(선장의 책임과 권한) ····· 9
제14조(선장에 대한 적성검사) ····· 9
제6장 인력의 배치와 운용 ····· 9
제15조(채용·배승관리) ····· 9
제16조(인수인계) ····· 10
제7장 여객선운용계획의 수립 ····· 11
제17조(여객선 제원 및 운항구역 등) ····· 11
제18조(항해업무) ····· 11
제18조의2(야간항해) ····· 17
제19조(입·출항 시 업무) ····· 18
제20조(통신업무) ····· 19

제21조(여객업무) ····· 21
제22조(여객준수 사항의 전달) ····· 23
제23조(화물관리) ····· 24
제24조(복원성 및 복원성 기록관리) ····· 25
제25조(위험물 등의 취급) ····· 25
제26조(정박 및 계류) ····· 25
제27조(선내 작업안전 관리) ····· 26
제8장 비상상황 대응 ····· 26
제28조(사고처리 시 준수사항) ····· 26
제29조(비상대응) ····· 27
제30조(피해보상 등의 조치) ····· 30
제31조(안전교육 및 훈련 등) ····· 31
제9장 선박의 점검·정비 ····· 32
제32조(선박의 안전점검) ····· 32
제33조(육상설비 점검) ····· 33
제34조(선내 정비 및 점검 등) ····· 33
제35조(유류관리) ····· 34
제36조(종선의 점검 및 정비) ····· 34
제10장 자료관리 ····· 35
제37조(문서관리) ····· 35
제38조(문서생산 등) ····· 35
제39조(문서관리대장) ····· 36
제40조(문서의 폐기) ····· 36
제41조(해도관리) ····· 36
제42조(여객선 이력장부관리) ····· 36
제42조의2(여객선 안전정보공개) ····· 37
제11장 운항관리규정의 확인, 검토 및 평가 등 ····· 38
제43조(운항관리규정 내부심사) ····· 38
제44조(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 38
제45조(운항관리규정의 비치 등) ····· 38
제46조(규정의 적용) ····· 39

【참고자료】
○ [붙임1] ~ [붙임17] ····· 41 ~ 93

제1장 목적 및 정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운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여객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항업무의 책임 및 업무수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항관리자”란 「해운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로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여객선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09.16.〉〈개정 2020.11.25〉
2. “해사안전감독관”이란 「해사안전법」 제58조에 따라 선박이나 사업장의 해사안전관리 상태를 확인·조사 또는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관리책임자”란 「해운법」 제21조의5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의 수립·이행 및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사업자가 선임한 사람을 말한다.
4.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5. “직원”이란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및 운항사와 그 밖에 선원법시행령 제3조의 해원을 말한다.
6. “부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선장 및 직원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
7. “육상작업원”이란 육상에서 여객 또는 차량의 정리, 유도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선내작업원”이란 선박에서 여객 또는 차량의 정리, 유도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운항계획”이란 기점·종점, 기항지, 항행경로, 항해속력, 운항횟수, 출항시간, 계절 운항시간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운항기준도”란 항로(기종점, 기항지, 침로, 변침점, 항해장애물 등), 표준운항시각, 항해속력,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하는 구간, 기타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선박의 항로도를 말한다.
11. “위험물”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에서 정한 위험물 및 승객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물건과 총포, 도검류 등을 말한다.
12. “항로도”란 항로의 출발지・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한 해도 등을 말한다.
13. “운항관리센터”란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공단에서 설치한 지역사무소를 말한다.〈신설 2020.11.25〉

제2장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제3조(안전관리 목표) 회사는 관리 선박의 안전운항 및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 선박의 안전운항 및 환경보호
2.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3. 고객만족
4. 여객

제4조(안전관리 방침) 회사는 안전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방침을 수립·시행한다.

1. 안전운항 및 환경보호와 관련한 법규 준수
2. 안전 및 환경보호 관련 비상대응훈련의 생활화
3. 부적합사항 발생 시 적절한 시정조치 실시
4. 법령에서 규정한 적절한 인적·물적 자원의 제공
5. 대 고객 서비스 강화

제5조(안전관리 방침 등의 이행·유지 및 확인) 〈개정 2020.11.25〉

① 회사는 인명과 선박의 안전 및 해양오염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 및 선원이 안전관리목표 및 방침을 이행·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내부심사 등을 통하여 목표와 방침에 대한 이행·유지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임직원 및 선원의 책임과 의무) 모든 임직원 및 선원은 회사의 운항관리규정이 항상 양질의 수준으로 운영·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1. 운항관리규정의 숙지 및 준수
2. 여객선 안전의 우선적 확보를 위한 무리한 운항 지양
3.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자격·경력을 갖춘 선원(예비원 포함)의 채용
4. 과승·과적 예방을 위한 승선인원, 화물집계표 확인 및 정확한 화물계측 실시, 다만 수화물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0.11.25>
5.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원의 적정한 교육·훈련 실시
6. 위험물 적재·운송방법 숙지 및 관련법령 준수
7.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제공
8. 기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련 법령의 준수

제3장 안전관리 조직 및 체계

제7조(최고경영자의 책임) 최고경영자는 회사가 소유·관리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육·해상 직원의 책임, 권한,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수행을 위한 물적·인적자원(안전운항을 위한 최신정보 포함)을 제공한다.

제8조(안전관리조직) ① 회사는 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조직을 두며,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의 관할구역과 안전관리의 책임 범위를 정한다.<개정 2020.11.25>

② 주된 사업소와 영업소 현황 및 안전관리책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사(주된 사업소)

가. 기본사항

상 호	소 재 지	연락처 (팩스)
씨스포빌(주)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길 30-80	033-734-6433 (033-734-6435)

나. 관할구역

- 전항로(강릉↔울릉(저동)↔독도)/전구간

다. 안전관리책임의 범위

- 강릉/울릉/독도 항로간 전반에 관하여 선장과 협력하고 안전운항확보

2. 강릉(영업소)

가. 기본사항

상 호	소 재 지	연락처 (팩스)
씨스포빌(주)	강원도 강릉시 창해로 14번길 51-26	033-653-8670 (033-653-7093)

나. 관할구역

- 전항로(강릉↔울릉(저동)↔독도)/전구간

다. 안전관리책임의 범위

- 강릉/울릉/독도 항로간 전반에 관하여 선장과 협력하고 안전운항확보
- 강릉터미널 내 승강대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2. 저동(영업소)

가. 기본사항

상 호	소 재 지	연락처 (팩스)
씨스포빌(주)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171	054-791-9330 (054-791-9332)

나. 관할구역

- 전항로(강릉↔울릉(저동)↔독도)/전구간

다. 안전관리책임의 범위

- 강릉/울릉/독도 항로간 전반에 관하여 선장과 협력하고 안전운항확보
- 저동터미널 내 승강대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③ 안전관리조직도는 [붙임17]과 같으며, 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선장과 안전관리책임자 및 해당 부서장간에 긴밀하게 협조한다. <개정 2020.11.25>

제4장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과 임무 등

제9조(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① 회사는 「해운법」 제21조의5에 따른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는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 중 1인은 수석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최고

경영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수시로 현안에 대해서 협의,개선토록 한다.<개정2019.09.16.><개정 2020.11.25>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여객선의 안전운항과 여객 및 화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항관리규정을 수립하고 여객선 운항과 관련한 안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한다.

④ 사업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변경 시 지체없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센터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해운법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2019.09.16.> <개정 2020.11.25>

제10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 ① 수석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운항관리규정 운영의 총괄 책임자로서 선장의 직무와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여객선의 운항 및 기타 수송의 안전 확보에 대해 업무를 총괄한다.
2. 운항관리규정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시행한다.
3. 선박의 운항 전반에 관하여 선장과 협력하여 여객수송의 안전을 확보한다.
4. 안전관련 육상직원 및 육상작업원을 지휘하고, 선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5. 일반화물(수화물 포함) 및 위험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반 규정을 준수하도록 육상직원 및 선원을 지도·감독한다.〈개정 2019.09.16.〉
6. 여객선의 정비계획에 따른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관련 증서의 관리 및 유지에 대해 감독한다.
7. 선장 및 기관장이 보고한 시설 결함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다.
8. 여객의 승·하선시설 및 부잔교(육상시설 포함)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정비 또는 불가피한 경우 관계기관 통보 등 적정한 조치를 한다.

9. 여객선 접·이안 및 여객 승·하선 시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0.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기타 관계기관의 직원이 선박 점검 등을 실시할 경우 점검에 입회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및 최고경영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11. 관계법령의 개정, 사내조직 또는 선박의 변경, 항로의 신설 또는 폐지 등 당해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 선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운항관리규정을 변경·신청한다.

12. 운항관리규정 관련 문서를 관리한다.

13. 선장과 협력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관리규정 기타 비상대응체제를 이행하고 유지한다.<신설2019.09.16.>

14. 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해 수시로 여객선에 승선하여 본선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신설2019.09.16.>

15. 여객선사 내 안전문화 구축을 위한 활동을 이행한다.<신설2019.09.16.>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근무체계)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여객선이 운항하고 있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강릉영업소에 근무하여야 한다. 여객선이 운항 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릉항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여객선과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2019.09.16.>

② 회사는 안전관리책임자가 10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업무대행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센터와 지방해양수산청장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업무대행자는 업무대행에 따른 책임을 진다.<개정2019.09.16.><개정 2020.11.25>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육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원·총괄하여야 하므로 선원으로 승선할 수 없으며, 선원 또는 예비선원이 안전관리책임자를 겸임할 수 없다.

제12조(육상직원의 책임과 권한) ① 여객화물담당자는 여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2019.09.16.>

1. 여객의 승하선에 관한 업무 총괄
2. 터미널 승선권 발급 및 승선절차와 관련한 안전관리책임자와의 업무 협의 및 안전조치
3. 여객 승하선시설에 대한 관리 업무 총괄
4. 여객안전관리선원에 대한 교육·관리<개정 2020.11.25>
5.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 보관·관리<개정 2020.11.25>
6. 여객대피시설 등 여객선 내 여객시설에 대한 관리
7. 여객 수화물과 위험물에 대한 관리<신설2019.09.16.>

② 해무담당자는 선박의 안전운항 지원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원의 채용·배승·휴가에 관한 사항
2. 선원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3. 신규채용 선원 직무교육
4. 제반증서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③ 공무담당자(선주회사인 정도산업 직원)는 선박의 안전운항 지원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박의 수리 및 선용품 공급
2. 안전설비 보급 및 관리

제5장 선장의 책임과 권한 등

제13조(선장의 책임과 권한) ① 선장은 여객선의 안전운항, 여객과 화물보호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안전관리목표 및 방침을 시행하고 「선원법」 등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필요한 경우 선장복무방침을 수립하여 선원이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인명, 여객선 및 환경보호와 화물보호를 위한 대응조치에 최우선적인 결정권한이 있으며, 필요할 경우 회사에 물적·인적 지원 요청권한을 갖는다.

④ 선장은 선박의 통상업무 중 여객관리는 여객안전관리선원, 정비관리는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0.11.25>

제14조(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① 선장은 「선원법」제66조2(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검사 기준)에서 정하는 적성심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회사는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인력의 배치와 운용

제15조(채용·배승 관리) ① 회사는 해당 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선원의 채용 및 배승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선장·기관장의 채용 시에는 승무경력, 면담, 운항실습 등을 통하여 지휘능력을 검증하여야 한다.<개정2019.09.16.><개정 2020.11.25>

② 회사는 선원 채용·승진에 있어 인사기록카드를 작성·관리한다.

③ 회사 및 선장은 선원과 선박 관련증서 및 선원 교육훈련증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책임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 선원의 승선, 항해시간별 적정 인원배치 및 승선선원의 자격유지를 검증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하여야 한다.

제16조(인수인계) ① 선장 및 기관장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외의 선원은 구두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다.

② 선장의 인수인계서는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선장 이외 선원의 인수인계서는 선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선장 및 기관장의 예기치 않은 일방적인 퇴사 등으로 인수인계서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차하위자가 대행한다.

③ 선장 및 기관장의 인수인계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상 업무 및 비상상황에 있어서 선원의 임무와 책임
2. 선원의 임무와 책임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외부·내부요인
3. 선원의 임무와 책임과 관련하여 과거에 발생하였던 사고경력 및 대처요령
4. 선원의 임무와 책임과 관련한 문서 관리

④ 필요시 선원은 후임자의 여객선 적응 및 관련 교육을 위해 동승할 수 있다.

⑤ 선장 또는 기관장의 업무대행을 위해 예비 선장 또는 예비 기관장으로 교체 시에는 다음 주요 사항에 대한 인수인계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신설 2020.11.25>

1. 항해 기관 구명 소방 및 통신설비 작동 실태 및 결함 등 참고사항
2. 연료유 및 윤활유 잔량, 수급계획 또는 수급일정 등

3. 여객실 및 여객 편의시설 관리 상태 또는 정비 계획

4. 관계기관 수발신 공문철 및 주요 선박 증서

5. 기타 주요 업무 등

제7장 여객선 운용계획의 수립

제17조(여객선 제원 및 운항구역 등) ① 여객선 씨스타 5호의 제원 및 운항구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06.>

선종	진수일자	총톤수	기관출력
일반여객선(고속선)	2009.06.12	388톤	5,760kW
선박치수(m)	항해속력	항로	항해구역
37.98×11.30×3.80	25노트 이상	강릉-울릉(저동)-독도	연해

② 여객선 씨스타5호의 승선인원은 다음과 같다.

1. 최대승선인원 : 446 명(여객 438 명, 선원 8 명, 임시승선자 0 명)

2. 승무정원 : 4 명

3. 비상부서배치표인원 : 6명 이상. 다만, 여객이 여객정원의 50%미만으로 탑승하는 때에는 비상부서배치표인원을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출항 전 현장에서 운항관리자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도 5명 이상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항관리자는 해사안전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1.12.06.>

제18조(항해업무) ① 선장은 여객선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예정항로 기상, 본선의 감항성 등을 종합하여 최적항로를 선정한다.

② 선장 및 기관장 또는 선장 및 기관장이 지정한 자는 운항 중에 매시간당 1회 이상 및 일일 운항 종료 시 아래 사항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항해일지 및 기관 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항해일지 및 기관 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11.25>

1. 비상 탈출경로 등 특수설비
2. 화재예방
3. 수밀문 등 수밀설비 이상 유무
4. 여객 안전 확보 상태
5. 기관 작동상태 등

③ 선장 및 항해사는 시계제한, 악천후, 협수로 통항 시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항해에 철저히 임하여야 하며, 안전운항을 위해 감속운항을 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입·출항시 및 항계 내에서 운항할 경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해양수산청고시에서 정한 속력 준수<개정2019.09.16.><개정2020.11.25>
2. 시계 불량 시 협수로, 사고다발 해역을 통과할 경우
3. 운항 중 돌풍 등 해상기상이 악화되어 감속운항이 필요한 경우

④ 선장은 승무정원에 따라 항해 중 적절한 선교당직 및 기관당직 인원을 배정한 항해 당직표를 작성하고 이를 선내 게시하여야 한다.

⑤ 항해안전 확보에 필요한 운항기준을 표시한 항로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항항로<개정 2020.11.25><개정 2021.12.06>

항로	출발지 (기점)	종착지 (종검)	항해 속력	항해 거리	운항 시간
강릉-울릉저동항(가두봉통과 위도37도26분, 경도130도52분)	강릉	울릉저동항	25노트 이상	100마일	약3시간
강릉-울릉저동항(쌍정초통과 위도37도33분, 경도130도55분)					
울릉저동항-강릉(가두봉통과 위도37도26분, 경도130도52분)	울릉저동항	강릉	25노트 이상	100마일	약3시간
울릉저동항-강릉(쌍정초통과 위도37도33분, 경도130도55분)					

울릉저동항-독도	울릉저동항	독도	25노트 이상	48마일	약1시간45분

2. 기점·종점 및 기항지의 위치와 그 상호간의 거리

기점(위치)	종점 또는 기항지(위치)	거리	비고
강릉	울릉도 저동항	100마일	
울릉도 저동항	강릉	100마일	
울릉도 저동항	독도	48마일	
독도	울릉도 저동항	48마일	

3. 항로상의 위험구역

가. 암초 및 저수심

1) 37-29.9N 130-54.8E 저동 우현방파제 1.4M

2) 37-29.8N 130-54.8E 저동 우현방파제 1.8M

3) 37-14.4N 131-52.0E 동도 - 서도사이 1.5M

4) 37-14.3N 131-52.0E 동도 방파제부근 2.3M

나. 사격 및 훈련구역

1) 38-09-30N 129-04-00E

2) 38-06-00N 128-57-45E

3) 37-33-30N 129-24-15E

4) 37-37-00N 129-30-20E

다. 어선조업·어장 및 교통 밀집 구간

1) 강릉항, 울릉도 입항시 조업중인 어선 주의

2) 관음도 - 쌍정초 / 관음도 - 죽도 구간

라. 관제구역·통항분리수역·특정해역 : 동해항구역 <개정 2021.12.06.> <개정 2023.02.27.>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동해・묵호항, 삼척항, 옥계항 안인항 해역)

1) 북위 37도 46분 23초, 동경 128도 57분 05초

2) 북위 37도 50분 18초, 동경 128도 59분 17초

3) 북위 37도 49분 14초, 동경 129도 08분 30초

4) 북위 37도 34분 43초, 동경 129도 19분 30초

5) 북위 37도 26분 40초, 동경 129도 24분 32초

6) 북위 37도 21분 24초, 동경 129도 18분 12초

7) 북위 37도 22분 47초, 동경 129도 15분 26초

마. 기타 항해에 장애가 있는 지점 : 없음

4. 선장이 위치보고를 해야 하는 지점

가.강릉-울릉 〈개정2019.9.16〉 <개정 2023.02.27.>

연번	보고지점	위도/경도	보고처
1	출항 보고 강릉항 출항 후 10분 이내		동해지사 운항관리센터 (6시이전,9시~18시) 경북지사 운항관리센터 (6~9시,18시이후)
2	(보고시기) 매시10분 ※ 특이사항 발생 시 지체없이 보고		
3	입항 보고 저동항 입항10분전 또는 저동항 입항(접안)완료 직후		

나. 울릉-강릉 : 〈개정2019.9.16〉 <개정 2023.02.27.>

연번	보고지점	위도/경도	보고처
1	출항 보고 저동항 출항 후 10분 이내		동해지사 운항관리센터 (6시이전,9시~18시) 경북지사 운항관리센터 (6~9시,18시이후)
2	위치 보고 (보고시기) 매시10분		
3	입항 보고 강릉항 입항10분전 또는 입항(접안)완료직후		

다. 울릉-독도 : 〈개정2019.9.16〉<개정 2023.02.27.>

연번	보고지점	위도/경도	보고처
1	울릉 출항 보고 저동항 출항 후 10분 이내		동해지사 운항관리센터 (6시이전,9시~18시) 경북지사 운항관리센터 (6~9시,18시이후)
2	독도 출항 보고 독도 출항후 10분 이내 또는 독도 선회 종료 시		
3	입항 보고 독도입항10분전,입항(접안)완료 직후 또는 독도 선회 시작 시, 저동항 입항10분전 또는입항(접안)완료 직후		

** 울릉-독도 위치보고는 항로상 문제점 발생 시 위치 및 상황 보고

5. 「선원법」 제9조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하는 구간

구 간	위도, 경도
가. 항구를 출입할 때	
나.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다. 선박의 충돌·침몰 등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을 통과할 때	
라.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 안개, 강설(降雪) 또는 폭풍우 등으로 시계(視界)가 현저히 제한되어 선박의 충돌 또는 좌초의 우려가 있는 때 2) 조류(潮流), 해류 또는 강한 바람 등의 영향으로 선박의 침로(針路) 유지가 어려운 때 3) 선박이 항해 중 어선군(漁船群)을 만나거나 운항 중인 항로의 통행량이 크게 증가하는 때 4) 선박의 안전항해에 필요한 설비 등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선박 운항이 곤란하게 된 때	

6.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안전운항을 위하여 감속운항을 하여야 하는 경우 <삭제2019.09.16.><개정 2020.11.25>

7. 태풍 내습 시 또는 기상악화 시 선박의 피항지

가. 태풍 내습 시 : 강릉항,사동항,도동항,저동항,천부외항,동해항,묵호항

나. 기상악화 시 : 강릉항,사동항,도동항,저동항,천부외항

8. 정기적으로 교행(交行)하는 다른 선박 현황

선박명칭	교행시간	교행위치
-	-	-

※ 선장은 본선과 정기적으로 교행하는 다른 선박의 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안전운항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9. 항로도에 관한 사항

가. 운항항로에 대한 항로 등이 표시된 해도를 보유하여야 한다.(「선박설비기준」 제93조에 따라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개정 2020.11.25>

나. 해도는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해도를 최신본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출항이나 운항을 정지하여야 하는 해상 등의 조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해 선박제원, 운항구역, 기상조건, 복원성 등을 감안하여 출항 및 운항을 정지하여야 한다.

2. 기상조건에 따른 출항·운항정지 기준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와 관련한 별표 10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선장은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항로의 해상상태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는 운항을 정지하여야 한다.

풍속		파고	가시거리
1	**평균풍속 13m/s 이상**	**최대파고 3.1m 이상**	**1km 이내**
※상기 운항 정지 기준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10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함			

가. 강릉 또는 울릉 → 출항시에는 기상청 동해부이 및 울릉부이를 기준으로 한다.

나. 울릉 → 독도 출항시에는 기상청 울릉부이를 기준으로 한다.

다. 동해부이 및 울릉부이의 고장 또는 수리(점검) 등으로 기상관측자료가 표출이 되지 않을 경우는 운항관리자와 선장이 협의하여 운항 및 운항통제를 결정한다.<신설2019.09.16.>

3. 선장은 돌풍 등으로 실제 당해 항로의 기상상태가 여객선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항을 중지하거나 회항, 피항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여객선이 운항 중 짙은 안개 등으로 시계가 악화된 경우(시정 1㎞ 이내)에는 안전한 곳에 임시정박하여야하며, 임시정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견시원 배치, 감속(안전속력 유지), 항해등 점등, 무중신호 취명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후 운항하여야 한다.<개정 2020.11.25>

5. 운항관리자가 안전운항에 결함이나 위험 등 저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여 운항중지를 요구한 때에는 운항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2019.09.16.>

6. 선박검사 증서상의 항해와 관련한 조건에 따른다.<개정 2020.11.25>

제18조의2(야간항해) ① 사업자는 야간운항(일몰 30분후부터 일출 30분전까지를 말한다) 중에 여객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조건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② 회사 및 선장은 운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어장, 교각 등 항로상 장애물 식별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

2. 기항지 접안시설과 선박에 설치된 야간조명설비의 상태

③ 선장 및 항해사는 야간운항 동안 선교 내 2인 이상의 항해당직체제를 유지하고, 육안 및 레이더를 통해 타선박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조문신설 2020.11.25>

제19조(입·출항 시 업무) ① 선장은 출항 전 승선하여야 하는 선원의 승선 여부를 확인한다.

② 선장은 출항 전 승선정원의 초과여부를 확인한다.

③ 선장은 출항 시 임시승선자를 포함한 본선에 승선한 모든 인원수를 최종 확인하여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한다.<개정 2020.11.25>

④ 선장은 「선원법」 제7조에 따라 출항 전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관리책임자 등에게 보고한다.<개정2019.09.16.>

1.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
2. 항해에 적합한 장비, 인원, 식료품, 연료 등의 구비 및 상태
3. 항로 및 항해계획의 적정성
4.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기상 및 해상 정보
5. 비상배치표 및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 숙지상태
6.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기·종점 출항전(종점항에서는 1시간 이상 체류시에만 해당) 선장 및 기관장(불가피한 경우에는 선장 또는 기관장이 위임한 자)은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제3조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자와 합동으로 붙임6에 따른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선장은 그 보고서를 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한다. 단 휴무 등으로 인하여 운항관리자가 부재중이거나 배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선장 및 기관장은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출항 5분전까지 통신망을 이용하여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한다.<개정 2020.11.25><개정 2023.02.27.>

⑥ 선장은 합동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하며, 조치를 요청받은 안전관리책임자(선박소유자 포함)는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선장은 입항 전 계류시설에 선박을 접안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안전관리책임자나 영업소 또는 취급점이나 운항관리자 등에 확인하여야 한다.

⑧ 선장 및 기관장은 입항 전 아래 사항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항해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조타장치
2. 항해장비
3. 기관기기 운전 상태
4. 갑판기기

제20조(통신업무) ① 선장은 운항관리센터와 교신상태를 유지하고, 출·입항 시 및 항로도에 표시된 위치보고장소 통과 시 운항관리센터에 출·입항 사실 및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선장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강릉 - 울릉 〈개정2019.9.16〉

출항보고	위치보고	입항보고
(보고시기) 출항 후 10분 이내 **(내용 및 순서)** 출항시간, 출항항, 선원0명, 여객 대인0명/소아0명/유아0명 /여객 합계0명, 도착항, ETA	**(보고시기)** 매시 10분 **(내용 및 순서)** 시간, 위치 및 ETA 현지 항로 기상 이상 유무 ※ 특이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고	**(보고시기)** 울릉(저동)항 입항10분 전 또는 입항(접안)완료 직후 **(내용 및 순서)** 입항예정시간 또는 입항 시간 및 입항지 이상 유무

나. 울릉 - 강릉 〈개정2019.9.16〉

출항보고	위치보고	입항보고
(보고시기) 출항 후 10분 이내 **(내용 및 순서)** 출항시간, 출항항, 선원0명, 여객 대인0명/소아0명/유아0명 /여객 합계0명, 도착항, ETA	**(보고시기)** 매시 10분 **(내용 및 순서)** 시간, 위치 및 ETA 현지 항로 기상 이상 유무 ※ 특이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고	**(보고시기)** 강릉항 입항10분전 또는 입항(접안)완료 직후 **(내용 및 순서)** 입항예정시간 또는 입항 시간 및 입항지 이상 유무

다. 울릉 - 독도 〈개정2019.9.16.〉

출항지	출항보고	위치보고	입항보고
울릉출항	**(보고시기)** 출항 후 10분 이내 **(내용 및 순서)** 출항시간, 출항항, 선원0명, 여객 대인0명/소아0명/유아0명 여객합계0명, 도착항, ETA	※ 울릉-독도 위치보고는 항로상 문제점 발생 시 위치 및 상황 보고	
독도입항 (선회시작)	**(보고시기)** 독도입항10분전 또는 입항(접안)완료 직후 **(내용 및 순서)** 입항예정시간 또는 입항시간 및 입항지, 이상 유무 **(보고시기)** 독도 미접안, 선회 시 **(내용 및 순서)** 0시0분 독도 선회 시작 보고		
독도출항 (선회종료)	**(보고시기)** 독도 출항후 10분 이내 **(내용 및 순서)** 0시0분 독도출항, 0시~0시까지 독도접안, 승선0명/하선0명/현재여객0명, 도착항, ETA **(보고시기)** 독도 선회종료 후 정상운항할 시 **(내용 및 순서)** 0시0분 독도 선회 종료하고 정상운항 중 이상 유·무 보고, 도착항, ETA		
울릉입항	**(보고시기)** 울릉 입항10분전 또는 입항(접안)완료 직후 **(내용 및 순서)** 입항예정시간 및 입항지, 이상 유무		

※18.3.3 해사안전감독관 수정지시

라. 선장이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하여야할 기타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09.16.>

보고종류	보고시기	보고내용
기타사항 보 고	비정상적인 운항이 발생한 경우	1. 시간과 위치 2. 사실 내용
	항해 중 항로상 예상치 못한 장애원인이 있을 경우	1. 시간과 위치 2. 사실 내용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은 정보 중 안전운항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1. 전달받은 시간 2. 사실 내용
	중간기항지에서 여객이 승하선할 경우 등	1. 여객정원수와 현 승선 여객수 2. 중간기항지 승선 여객수
	여객의 정원승선으로 중간기항지의 여객을 수송할 수 없게 된 경우	1. 여객정원수와 현 승선 여객 수 2. 중간기항지 예상 승선 여객 수
	출항 전 운항관리자로부터 통보받은 기상 및 해상상태와 현지항로의 기상 및 해상상태가 현저히 다른 경우	현지 기상 및 해상상태와 위치
	해당 선박에 해양사고가 발생하거나 항해 중 조난선박을 발견한 경우	1. 사실 내용과 위치 2. 구조방법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③ 선장은 「선원법」 제14조에 따라 떠다니거나 가라앉은 물건 등 선박의 항해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것과 마주쳤을 때에는 그 사실을 가까이 있는 선박의 선장과 해양경찰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동해해양경찰서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진·출입시간 보고 시에는 항계 내에서는 “VHF 채널12 ”, 항계 외에서는 “VHF 채널16”으로 교신한다.

⑤ 선장은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사용가능한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해양긴급신고번호 119 또는 구조기관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여객업무) ① 회사는 매표담당자로 하여금 승선권 발행 시 여객의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하고, 여객정원을 초과하여 승선권을 발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여객의 승선 시에는 담당직원을 터미널 개찰구에 배치하여 여객 신분증 및 승선권을 확인 후 승선하도록 한다.<개정2019.09.16.>

③ 여객의 승·하선은 승강대를 통하여야 하며, 선장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승강대를 점검하고 여객이 승·하선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25>

④ 여객의 승·하선 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안전조치 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⑤ 여객의 승·하선 시에는 본선 선원 및 선사 육상직원 입회하에 안전하고 질서있게 승·하선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⑥ 선장은 여객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시키지 않으며, 승선인원은 선장이 지정한 자가 확인하여 선장에게 보고한다.

⑦ 선장은 운항관리자가 없는 기항지의 경우 본선 선원 중 여객안전관리선원을 지정하여 여객이 안전하고 질서있게 승·하선하도록 하여야 하며, 여객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25>

⑧ 여객선이 운항중일 때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선원이 여객 및 선내 특이사항의 발생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상악화 등 운항 상황이 악화될 때에는 수시로 순찰을 하도록 한다.

⑨ 「해운법」 제21조의2(여객선등의 승선권 발급 및 승선 확인 등) 제5항에 따라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또는 실물 형태로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하며, 승선권 관리책임자는 수시로 보관장소 및 관리 상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23.02.27.>

⑩ 선원은 화재, 충돌, 퇴선, 테러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선장의 지휘에 따라 여객안전을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비상탈출구 위치 및 대피 방법에 대한 안내방송 이행
2. 담당구역의 여객 대피 안내

⑪ 선장은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설치 및 확인한다.

1. 여객의 출입제한 및 통제구역에 「제한구역」, 「출입금지」, 「통제구역」, 「통행금지」 등의 표지판을 설치한다.
2. 선원의 허락 없이 작동 또는 접촉해서는 안 될 설비 및 장치에 「촉수엄금」 또는 「손대지 맙시다」 등의 표지판을 설치한다.
3. 계단입구나 출입문 높이가 낮은 객실 등에는「머리조심」표지판을 부착한다.
4. 선내 편의시설의 고정상태를 확인한다.
5. 항해 중 선원으로 하여금 여객구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수시로 순찰시켜야 하며, 법령 및 운송계약에서 정한 여객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 기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특이사항 발견 시 선장의 지시를 받아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6.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등 특별보호여객의 현황 및 탑승 위치

를 파악한다.

제22조(여객 준수사항의 전달) ① 선장은 여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전달할 때에는 여객 승선 중 또는 승선 완료 직후에 모니터, 선내 방송시설을 이용하거나 선원의 직접시범 등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여객이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 시 한국어 방송에 이어서 외국어로 방송한다.

② 여객이 지켜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의 출입제한 및 통제구역에 대한 출입금지
2. 선원의 허락 없이 작동금지 또는 접촉해서는 안 될 설비 및 장치에 대한 접촉금지
3. 선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음주·가무 등의 금지
4. 선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 금지
5.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6. 도박, 고성방가 및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금지
7. 선박운항관리자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8. 그 밖에 선원 등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지시 등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금지

③ 여객에게 알려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1.25><개정 2023.02.27.>

1. 승·하선 질서의 유지
2. 구명조끼, 구명설비 및 소화기 위치와 사용법
3. 비상대피로 파악 등 비상 시 행동요령
4. 항행시간, 해상상태 및 입·출항 시 예정시간
5. 선내에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물건의 취급방법

6. 여객이 소지한 위험물에 대한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7. 해양긴급신고 번호 119<개정2019.09.16.>

8. 출항 전 점검결과 내용 및 점검보고서의 객실 내 게시 위치

9. 기타 여객이 알아야 할 사항

④ 선내에 게시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3.02.27.>

1. 구명조끼의 착용법

2. 비상대피도면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

3. 구명조끼 및 소화설비 보관장소

4. 각 여객실의 정원

5.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제23조(화물관리) ① 여객 휴대품 및 수화물(이하 “수화물 등”이라 한다.) 이외의 일반화물은 적재하지 아니한다.<신설2019.09.16.>

② 수화물 등의 최대 적재중량 및 적재장소(세부사항은 복원성 계산서 참고)는 다음과 같다.<신설2019.09.16.>

1. 수화물 : 2.21톤/여객 휴대 또는 LUGGAGE STORE

2. 추가 수화물 및 휴대품(extra load) : 19.5톤/여객 휴대 또는 LUGGAGE STORE

3. 비품 등 : 0.20톤/창고

③ 선장이 수화물 등의 적재로 인한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인 및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신설2019.09.16.>

1. 선장은 수화물 등을 적재시에는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선원이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 수화물등은 지정된 장소에 적재하고 그 외의 장소(갑판,통로)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선장은 수화물 등의 적재상태 및 복원성을 확인하고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출항하여야 한다.

4. 선장은 여객선 운항 중 선원으로 하여금 수화물 등의 고정상태 등 이상유무를 매시간 1회 이상 또는 선내순찰시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2019.09.16.>

제24조(복원성 및 복원성 기록관리) ① 사업자 또는 선장은 「선박안전법」 제28조에 따라 여객선의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정부대행검사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복원성 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2019.09.16.><개정 2020.11.25>

② 선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복원성 자료를 유지·관리하여 본선에 비치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운항관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2019.09.16.><개정 2020.11.25>

제25조(위험물 등의 취급) ①위험물은 적재하지 아니한다.<신설2019.09.16.>

② 회사는 수화물 등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는 선내로 반입 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2019.09.16.>

③ 선장은 선내로 반입한 위험물을 발견한 때에는 반드시 하역조치 후 출항하여야 한다.<신설2019.09.16.>

제26조(정박 및 계류) 선박의 정박(계류) 시 선장은 아래 사항을 최종 확인 후 필요시 정박당직자를 배치한다.

1. 접안 장소와 수심, 선박의 흘수, 고조와 저조의 시각과 수위
2. 계선 결속상태, 닻의 배치와 닻줄의 길이
3. 주기관의 상태 및 비상 시 사용 가능성
4. 선상에서 수행되는 작업
5. 선박내 오수양 및 탱크의 내용량

6. 표시되어 있는 신호 혹은 등화

7. 선박에 남아 있는 선원의 수와 재선 중인 그 밖의 자의 현황

8. 특별히 요구되는 항만규칙

9. 선장의 당직지침과 특별 지시사항

10. 비상상황 발생 시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항만당국을 포함한 선박과 육상의 이용 가능한 통신방법, 상륙자 비상소집 방법

11. 선박의 안전 및 오염방지를 위해 중요한 기타 사항

제27조(선내 작업안전 관리) ① 선내 작업의 안전성이 필요한 작업의 경우 선장의 허가를 받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선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다.

1. 밀폐구역 작업

2. 고소 작업

3. 열 작업

4. 여객승선구역 작업

5. 선박의 수밀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6. 기타 선장이 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

제8장 비상상황 대응

제28조(사고처리 시 준수사항) 선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고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인명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할 것

2. 사고 시 사고처리 업무는 모든 업무에 최우선하여 시행할 것

3. 사태가 낙관적이어도 항상 최악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조치를 강구할 것

4. 선장의 대응조치 및 지시사항을 따를 것

5. 선장 및 선원은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기 전에 선박을 떠나지 말 것<개

정 2020.11.25>

6. 육상근무자는 육상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개정 2020.11.25>

제29조(비상대응) ① 선장은 다음의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선원들의 임무, 소지품, 배치위치를 포함한 선내 비상부서배치표(붙임8)를 작성하여 조타실 등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반복 훈련으로 선원에게 주어진 임무를 숙지하도록 하며, 제반사항을 지휘함으로써 비상상황에 대처하여야 한다.

1. 화재
2. 충돌, 좌초, 전복
3. 조타기 고장
4. 기관 고장(추진력 상실 포함)
5. 인명관련 비상 사고(퇴선, 익수자 발생 등 인명사고)
6. 해양오염 등

② 안전관리책임자와 선장은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한 대피장소를 지정하고 그 위치를 나타낸 도면(붙임3) 또는 그림, 비상 신호, 구명기구의 비치장소, 여객행동요령 등을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정전 시에도 선내에서 대피 장소까지 탈출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이동 경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선장 및 선원은 사고발생 시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즉시 사용가능한 통신장비 등을 동원하여 인접한 VTS 및 구조기관에 구조요청을 한 후 비상배치표에 따라 사고대응 및 수난구호기관의 구조협력과 안전지시 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선장은 비상상황 발생 시 경고방송, 기적 또는 사이렌을 이용하여 대피

지시를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장소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붙임10의 비상시 신호체계 및 여객의 행동요령 예시 참고)

1. 승선인원 5명〈신설 2019.09.16.〉〈개정 2021.12.06.〉

비상상황					퇴 선				
총괄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총괄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브릿지 (선장)	1층 우현중앙 (일등기관사)	1층 좌현중앙 (일등항해사)	1층 우현선미 (항해사 또는 기관사)	1층 좌현선미 (기관장)	브릿지 (선장)	1층 우현중앙 (일등기관사)	1층 좌현중앙 (일등항해사)	1층 우현선미 (항해사 또는 기관사)	1층 좌현선미 (기관장)

2. 승선인원 6명〈개정 2019.09.16.〉〈개정 2021.12.06.〉

비상상황						퇴 선					
총괄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구조정	총괄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구조정
브릿지 (선장)	1층 우현중앙 (항해사 또는 기관사)	1층 좌현중앙 (일등항해사)	1층 우현선미 (항해사 또는 기관사)	1층 좌현선미 (기관장)	일등기관사	브릿지 (선장)	1층 우현중앙 (항해사 또는 기관사)	1층 좌현중앙 (일등항해사)	1층 우현선미 (항해사 또는 기관사)	1층 좌현선미 (기관장)	일등기관사

3. 승선인원 7명〈신설 2019.09.16.〉〈개정 2021.12.06.〉

비상상황						퇴 선					
총괄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구조정	총괄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구조정
브릿지 (선장)	1층 우현중앙 (항해사 또는 기관사)	1층 좌현중앙 (일등항해사)	1층 우현선미 (항해사 또는 기관사)	1층 좌현선미 (기관장, 항해사 또는 기관사)	일등기관사	브릿지 (선장)	1층 우현중앙 (항해사 또는 기관사)	1층 좌현중앙 (일등항해사)	1층 우현선미 (항해사 또는 기관사)	1층 좌현선미 (기관장, 항해사 또는 기관사)	일등기관사

4. 선내훈련시 〔붙임8〕비상부서 배치표에 따라 직책별 담당의무를 숙지하여야 한다.<신설2019.09.16.>

5. 선내훈련은 〔붙임9〕비상대응훈련 주기 및 시나리오의 훈련주기에

따라 실시한다.<신설2019.09.16.>

6. 선내훈련시 〔붙임10〕비상시 신호체계 및 여객의 행동요령의 신호에 따라 훈련을 실시한다.<신설2019.09.16.>

⑤ 선장 및 선원은 사고발생 시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우선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사고확대 방지 및 여객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사용가능한 통신장비 등을 이용하여 해양긴급신고번호 119 또는 구조기관 등에 즉시 구조요청을 한다.

【비상상황 연락기관】

<신설2019.09.16.><개정 2020.11.25.> <개정 2023.0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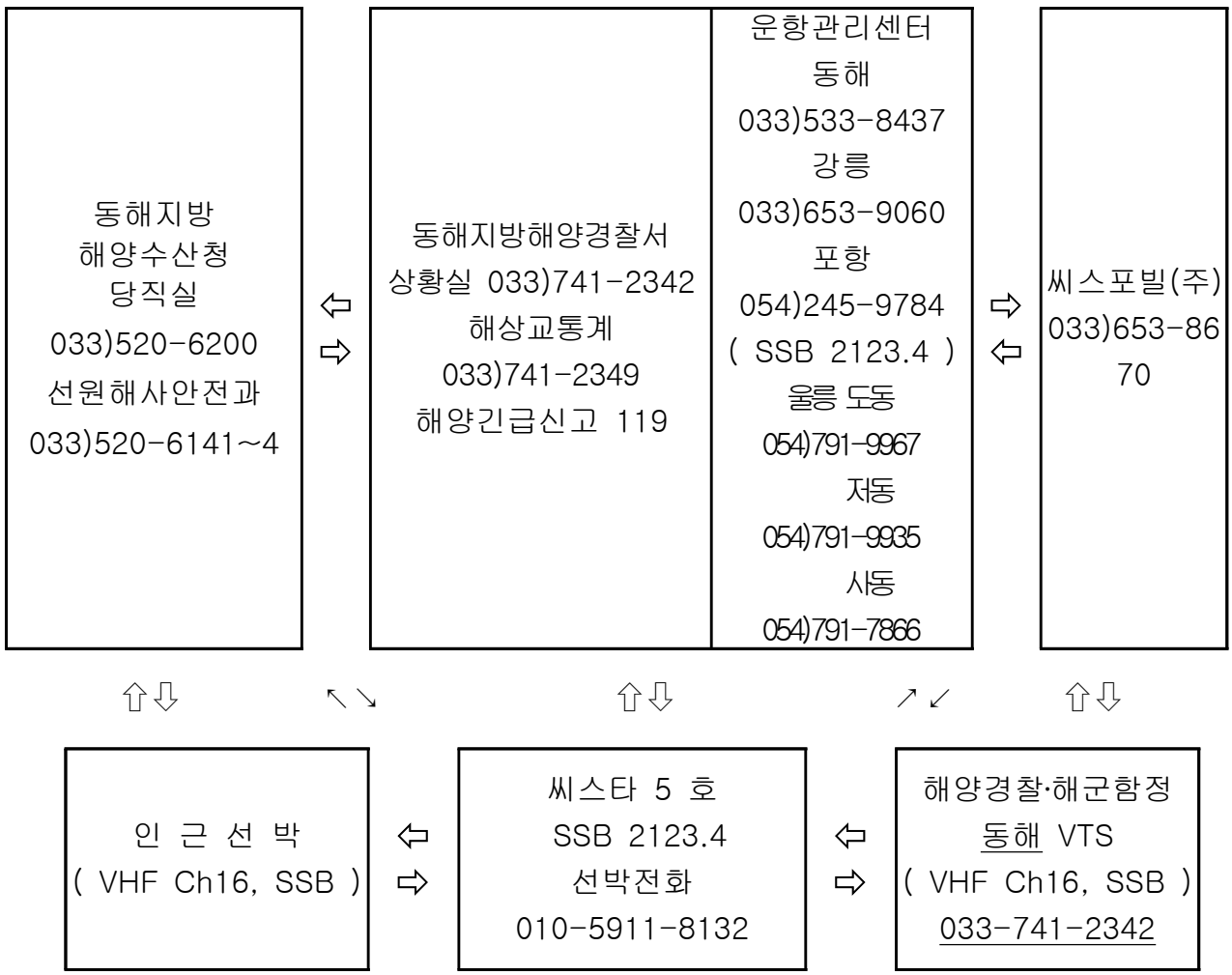

【비상조직도 및 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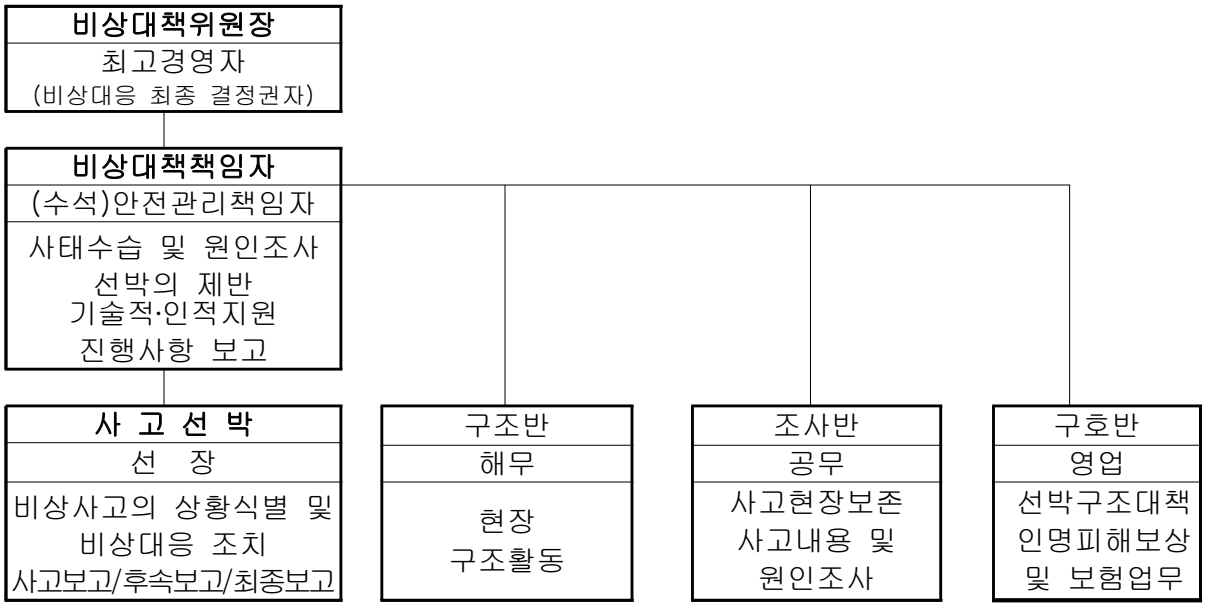

2. 비상배치표에 따라 사고대응 및 수난구호기관의 구조협력과 안전지시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해양사고 및 응급환자 발생 시에 대비하여 인근병원 응급실 등 의료기관과 비상연락방법을 확보한다.

가. 강릉의료원(전화번호 033-610-1453)

나. 동인병원(전화번호 033-650-6105)

다. 울릉보건의료원(전화번호 054-790-6912) <신설 2021.12.06.>

4. 선장은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필요 시 사고처리에 대한 증거확보 및 현장을 보존한다.

5. 선장은 사고의 내용 및 진행상황을 수시 보고하며 입항 후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센터 및 해양경찰서에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출하고 사고원인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신설2019.09.16.>

제30조(피해보상 등의 조치) ① 회사는 해양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29조제5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는 구호반 등과 비상대책책임자, 비상대책위원장을 계통으로 하여 피해보상반을 운영하고, 여객·선원공제 및 선주배상책임공제 등과 관련한 피해보상 조치를 한다.

제31조(안전교육 및 훈련 등) ① 여객선의 안전운항 및 해양사고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원교육(선원 및 육상근무자 포함) 등을 실시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원에 대한 안전운항, 해양사고방지 교육의 실시 방법, 실시 시기, 실시 장소, 교관 요원 확보 방법이 포함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2.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원에게 분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3. 선장은 선사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계획을 토대로 선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4. 선장은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선원 및 기타 승선자의 휴식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② 선장은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선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부서배치표를 게시하고 비상시에 대비한 선내비상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실시에 관한 내용은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고, 훈련 실시 상황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존한다.

③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해양사고 및 여객선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점검에 적극 참여한다.

④ 선박 비상대응훈련 및 교육시행주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02.27.>

구분			주기	대상자
선내숙지훈련			수시	모든 선원
해상인명 안전훈련	소방훈련		10일	모든 선원
	퇴선훈련		10일	모든 선원
	구조정 진수훈련		2개월	모든 선원
해양사고 대응훈련	선체손상 대처훈련 - 충돌 및 좌초, 추진기관 고장, 악천후대비 등		3개월	모든 선원
	인명사고 시 행동요령	해상추락	6개월	모든 선원
		밀폐공간에서의 구조	2개월	모든 선원
	비상조타훈련		3개월	모든 선원
기름유출 대처훈련			매월	모든 선원

⑤ 선원 법정교육은 붙임5와 같다.

제9장 선박의 점검·정비

제32조(선박의 안전점검) ① 선장 및 기관장(불가피한 경우에는 선장 또는 기관장이 위임한 자)은 운항관리자와 합동으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3조에 따라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선장은 그 보고서를 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운항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출항하는 경우, 선장은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센터에 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1.25>

② 제1항에 따른 출항 전 점검 실시 결과 결함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 후 출항하여야 하며, 감항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결함사항으로 즉시시정이 어려운 경우 기한을 두어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여객선 정기점검은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여객선 정기점검표에 따라 실시하며,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월례·특별점검·노후여객선 특별점검 별지 제3호부터 제5호

서식에 의거 담당 운항관리자가 시행하는 점검에 안전관리책임자, 선장 및 기관장이 입회하여 수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25>

④ 안전관리책임자는 운항관리센터와 관계기관 및 검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점검에 입회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운항관리센터에 증빙자료(서류 또는 사진 등)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여객선의 장비 및 시설현황은 붙임11과 같다.

제33조(육상설비 점검) 안전관리책임자는 선박 접안시설, 승객 탑승시설을 수시로 점검·확인하여 미비사항 발견 시 자체정비 또는 불가피한 경우 관계기관 통보 등 적정한 조치를 한다.

제34조(선내 정비 및 점검 등) ① 선체 및 갑판은 입거 시 보수정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실 및 기기류는 점검표(붙임7)에 의거 점검 및 정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갑판 보기류는 접·이안 시 및 하역 시 정상적인 작동을 위하여 입항 전에 사전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 시 정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계선설비의 작동부에 대해 윤활유(그리스) 주입 등의 정비작업 및 고착부에 대한 낙청·도장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창고는 정리정돈하고 거주구역 및 여객구역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11.25>

⑥ 항해장비 및 통신설비에 대한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기적, 호종 등의 비치상태 및 항해 등의 작동상태를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⑧ 구명, 소화설비의 비치상태 및 성능을 수시로 확인하여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⑨ 항해 중 중요기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자체정비 완료한 경우 고장개소, 긴급조치 내용 등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여 차기 정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⑩ 장비 및 시설 등의 점검 후 여객선의 안전운항과 여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35조(유류 관리) ① 기관장은 유류 수급 전 유류 잔량 확인, 유류 수급설비 및 비상설비 점검, 비상연락수단 확보, 해양오염방지자재 배치, 당직인원 배치 등을 통해 유류 수급을 위한 준비를 한다.

② 기관장은 유류 수급 중 주기적으로 유류 잔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비상설비 및 비상연락수단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유류 수급 후 유류 잔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유류기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유류 수급 시 해상에 오염물질이 누설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오염물질을 확인할 경우 즉시 유류 보급차와 선장 및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이를 알리고, 전 선원은 해양오염에 대한 비상대처활동을 수행한다. 선장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해양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기관장은 오염방지자재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6조(종선의 점검 및 정비) 해당사항 없음

제10장 자료관리

제37조(문서관리) ① 선장은 선내 문서관리의 총괄책임자로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운항관리규정과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관리
2. 수발문서의 최종 승인자로서 문서내용의 검증
3. 안전관리문서 및 외부문서 등 문서의 총괄관리
4. 선내문서 및 기록의 통제
5. 승선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자료 등에 대한 외부유출 방지 및 관리 철저

② 선내 부서별 문서관리담당자는 1등항해사, 1등기관사로 정하며 부서내 문서·기록의 수발신 및 작성·검토, 보관 및 폐기, 기록 관리의 제반사항을 관리한다.

③ 선장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문서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환경 하에서 쉽게 검색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서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38조(문서생산 등) ① 문서의 작성, 검토 및 승인은 아래의 원칙으로 수행한다.

1. 작성 : 업무 성격에 따른 실무담당자/책임자
2. 검토 : 상위직급자
3. 승인 : 선장

② 선장은 문서 내용에 따라 회람, 교육 또는 훈련 등의 조치를 취한다. 특히, 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문서는 선원에게 공람 조치하여 숙지하도록 한다.

③ 선내 문서는 항상 최신본을 유지하여야 하고, 회람용 문서는 전 선원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

제39조(문서관리대장) 여객선에는 붙임13 문서관리대장 서식에 따라 서류 및 증서 등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문서의 폐기) ① 선장은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무효화된 문서 및 자료는 회사에 제출하거나, 폐기여부를 결정하여 폐기하고 회사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효된 문서를 법적/지식보존의 목적으로 보관하고자 할 경우, 안전관리책임자 및 선장은 “참고용”으로 표시하여 오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해도관리) ① 선장 또는 항해사는 항행통보를 수령한 후 해당 항로 해도 및 수로서지에 대한 소개정을 실시하고, 발행 연도말 기준으로 1년간 보관한다.

② 선장 또는 항해사는 본선에서 보유 중인 해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도목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2조(여객선 이력장부관리) ① 회사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3항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명세
2. 선박의 도입 및 매매
3. 선박 도입 후 운항항로 이력
4.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결과

5. 해양사고이력(「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개정 2020.11.25>

6. 선박 개조 이력(「선박안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구조변경허가대상을 말한다)<개정 2020.11.25>

② 선장은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와 관련 근거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42조의2 (여객선 안전정보공개) ① 사업자는 「해운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여객선 안전정보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여객선의 선명, 선종, 선령, 총톤수, 여객정원, 화물의 적재한도 및 운항속력

2. 선박검사 일자 및 선박검사 결과

3. 해양사고 이력(「해사안전법」 제57조에 따라 공표되는 해양사고를 말한다)

4. 「해운법」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다만, 여객운송사업자의 내부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하여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5. 「해운법」 제19조제1항제1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 내용

② 사업자는 「해운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의3서식의 여객선 안전정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반기(半旗)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조문신설 2020.11.25>

제11장 운항관리규정의 확인, 검토 및 평가 등

제43조(운항관리규정 내부심사)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운항관리규정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활동 등에 대한 적합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항관리자의 정기적인 이행 상태 확인 전에 안전관리부서에 대한 내부심사 절차를 수립, 이행하여 검토 및 평가결과를 최고경영자 및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는 회사의 문서화된 운항관리규정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44조(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원인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규정에서 요구하는 절차·조건의 누락
2. 사고(선체, 기관 및 화물사고, 인명손상), 기기 및 장비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손해 또는 운항 상 손실을 유발하는 경우
3.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선박검사기관 및 기타 외부기관 점검 지적사항

② 부적합사항은 시정조치 절차(붙임14)에 따라 기한 내 시정조치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관련기관 및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후 시정조치를 종결한다.

제45조(운항관리규정의 비치 등) ① 회사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선박과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에 비치하여 소속 직원과 여객이 이를 열람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운항기준도

를 선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해운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9의2호가목에 따라 운항관리규정 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규정의 적용) ① 이 규정은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3장에 따른 종선안전관리에도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운항관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객선의 선종별·톤수, 회사의 구조, 항만별 특성 등에 따라 가감·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이 규정 이외의 기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신설 21.12.06>

이 규정은 2022.01.06.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붙임 1] 항로도

[붙임 2] 일반배치도

[붙임 3] 인명구조장비

[붙임 4] 화재제어도

[붙임 5] 선원법정교육 목록

[붙임 6]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붙임 7] 선박계획정비표

[붙임 8] 비상부서 배치표

[붙임 9] 비상대응훈련 주기 및 시나리오

[붙임 10] 승객의 비상시 행동요령

[붙임 11] 여객선 장비 및 시설현황

[붙임 12] 선박 문서 보존연한

[붙임 13] 문서관리대장

[붙임 14] 내부심사절차서

[붙임 15] 내부심사 점검표 및 보고서

[붙임 16] 여객선 정기 점검표

[붙임 17] 안전관리조직도

[붙임1] 항로도<개정 2023.02.27.>

항 로 도(강릉-울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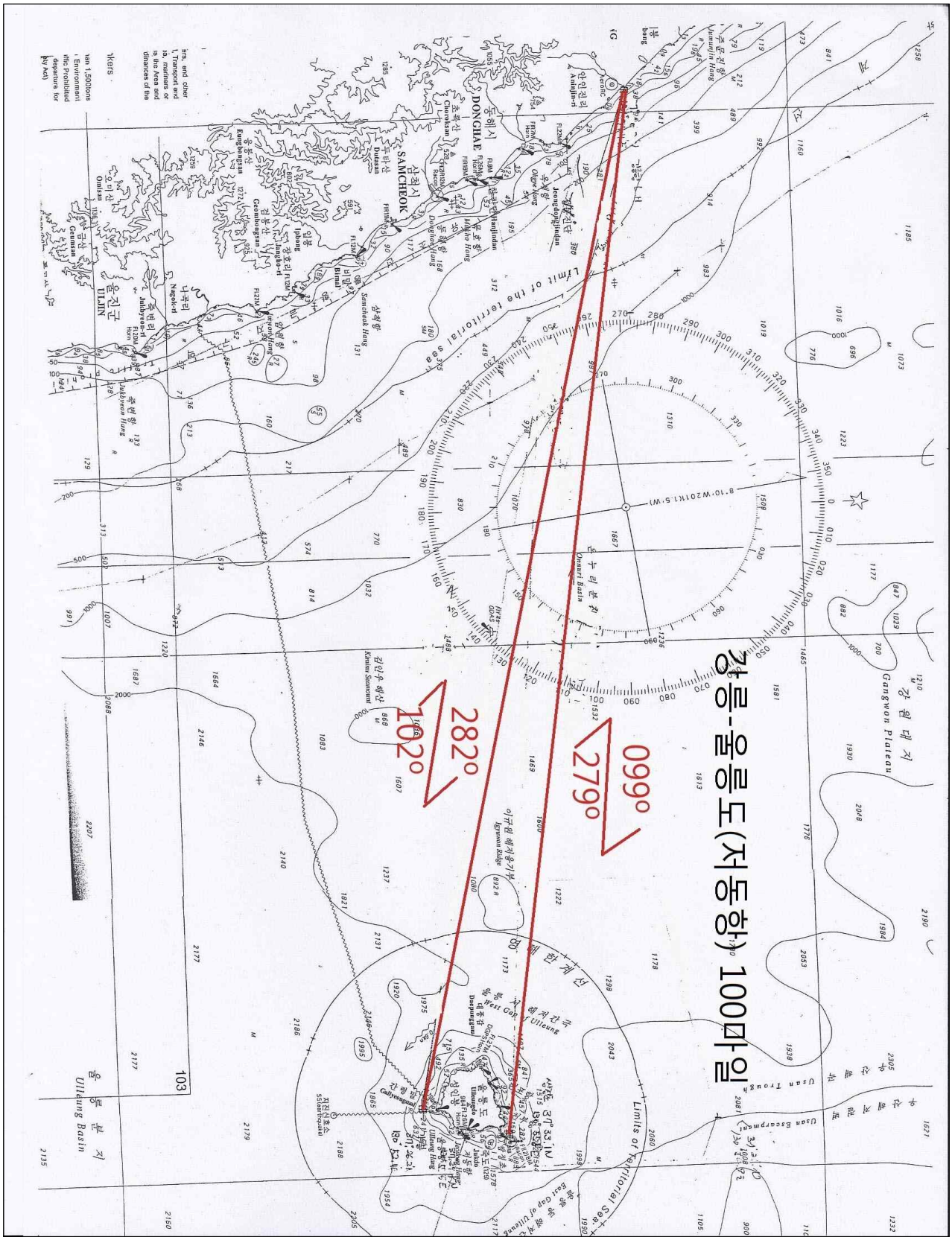

항 로 도(울릉-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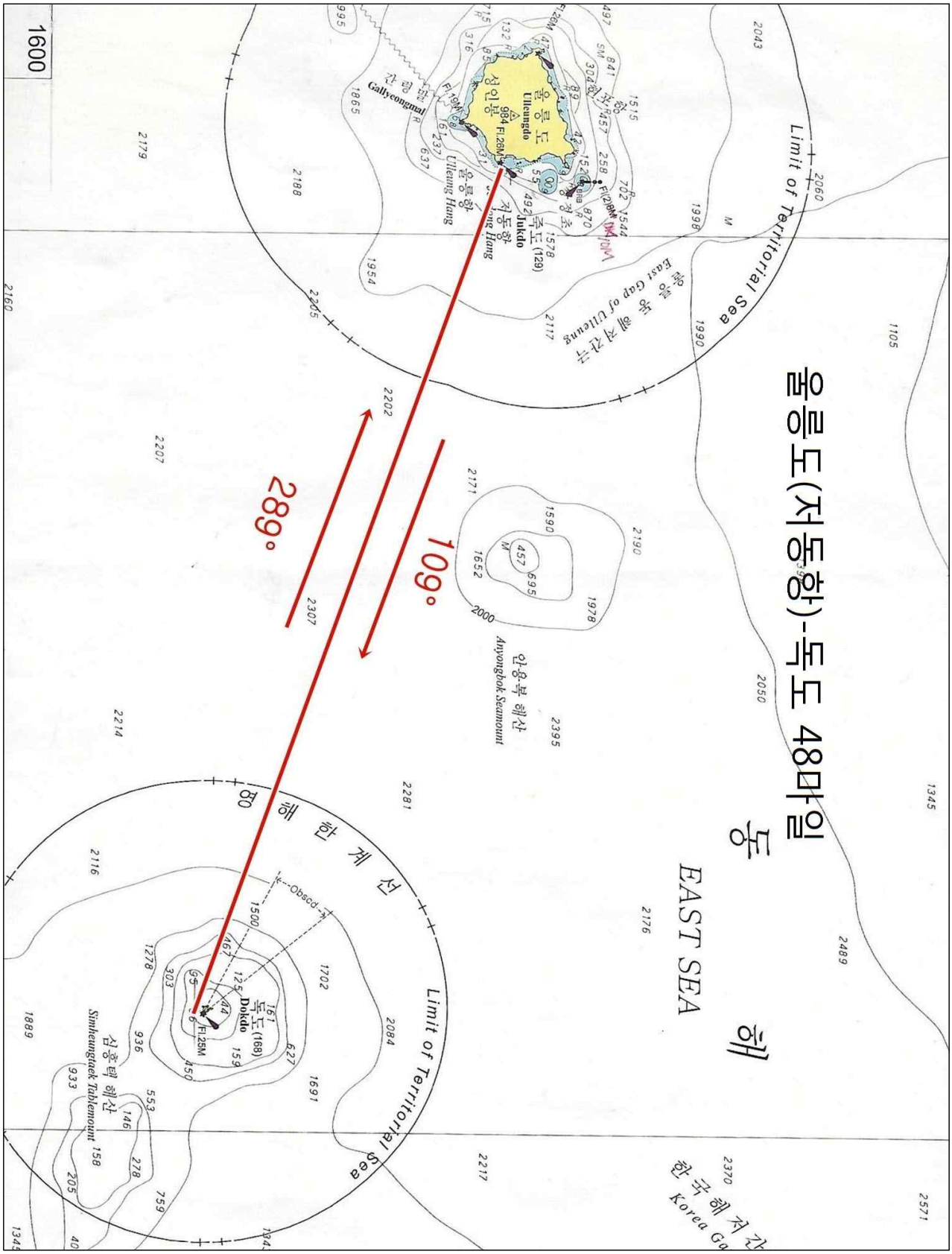
울릉도(저동항)-독도 48마일
동 해
EAST SEA
Limit of Territorial Sea
영 해 한 계 선
Limit of Territorial Sea
289°
109°
울릉도
Ulleungdo
성인봉
Gallyeongmal
울릉항
Ulleung Hang
Jukdo
저동항
Jong Hang
독도(129)
Fl.26M
Fl.19M
Fl.25M
Fl.25M
Dokdo
독도(168)
Obscd
안용복 해산
Anyongbok Seamount
심흥택 해산
Simheungtaek Tablemount
한국해저간
Korea Ga
1600

[붙임2] 일반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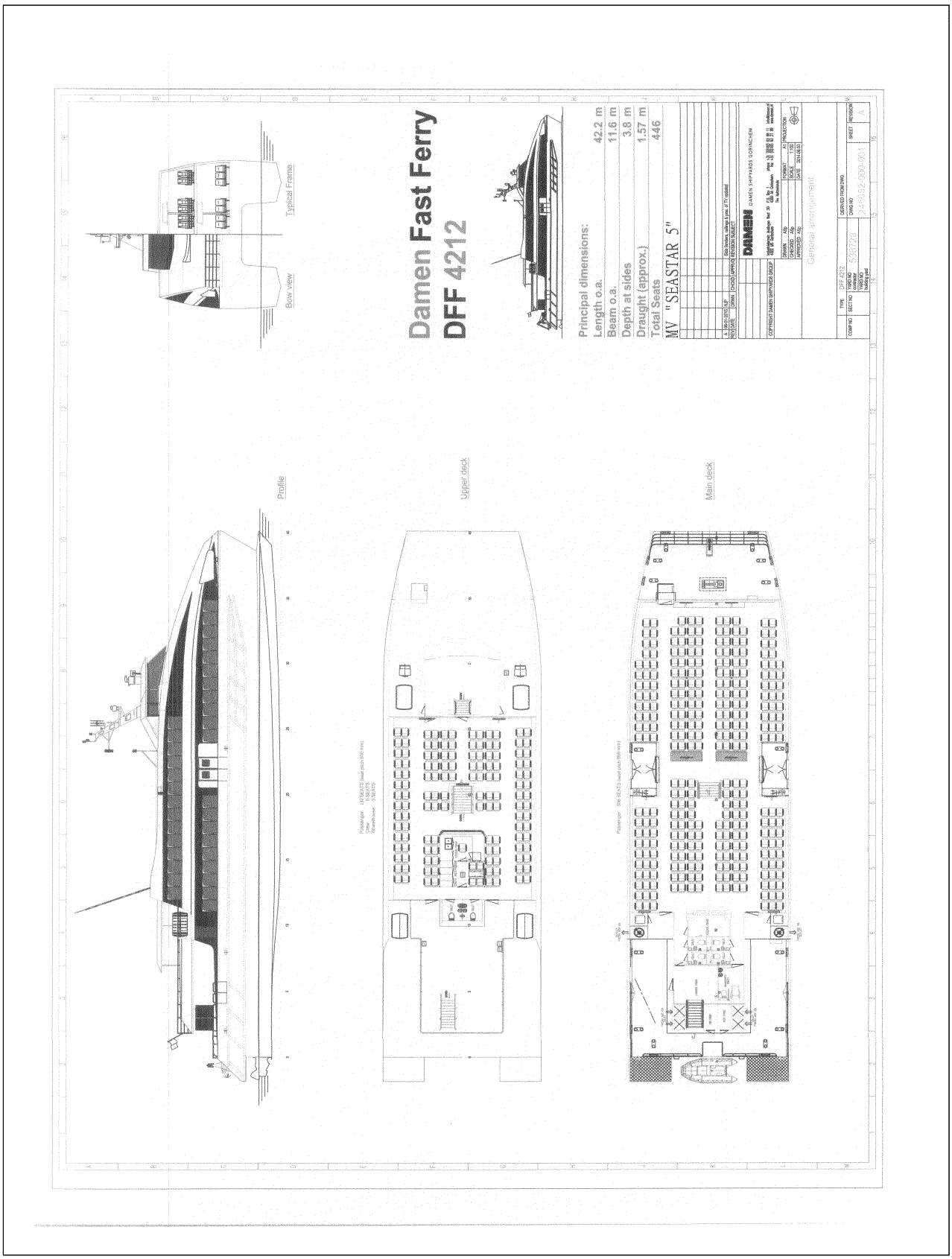
Damen Fast Ferry
DFF 4212
Principal dimensions:
Length o.a. 42.2 m
Beam o.a. 11.6 m
Depth at sides 3.8 m
Draught (approx.) 1.57 m
Total Seats 446
MV "SEASTAR 5"
Profile
Upper deck
Main deck
Typical Frame
Bow view
DAMEN
DAMEN SHIPYARDS GORINCHEM
General arrangement
DFF 4212
538729
249052-009-001
A

[붙임3] 인명구조장비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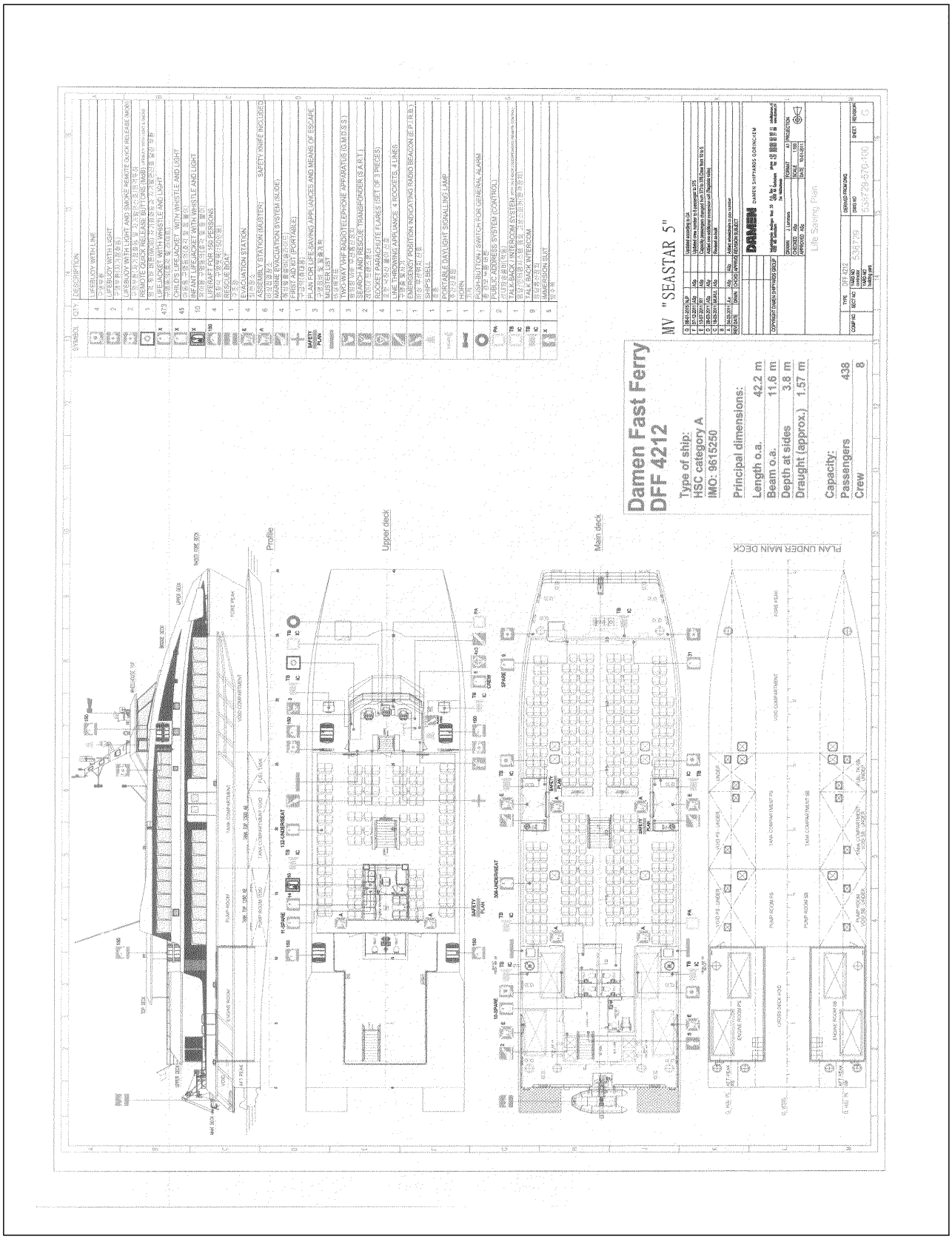

비상탈출로 (EVACUATION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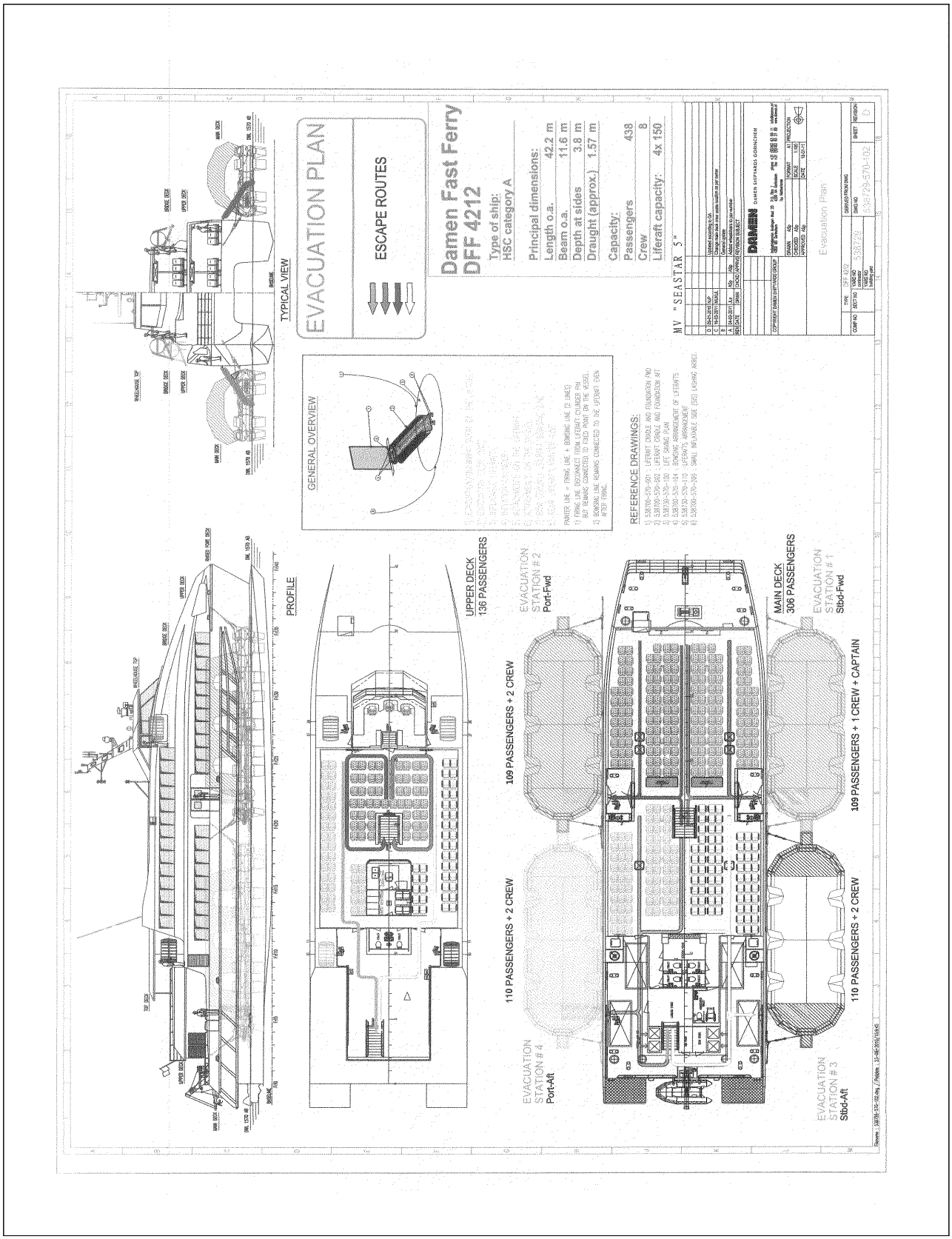

[붙임4] 화재제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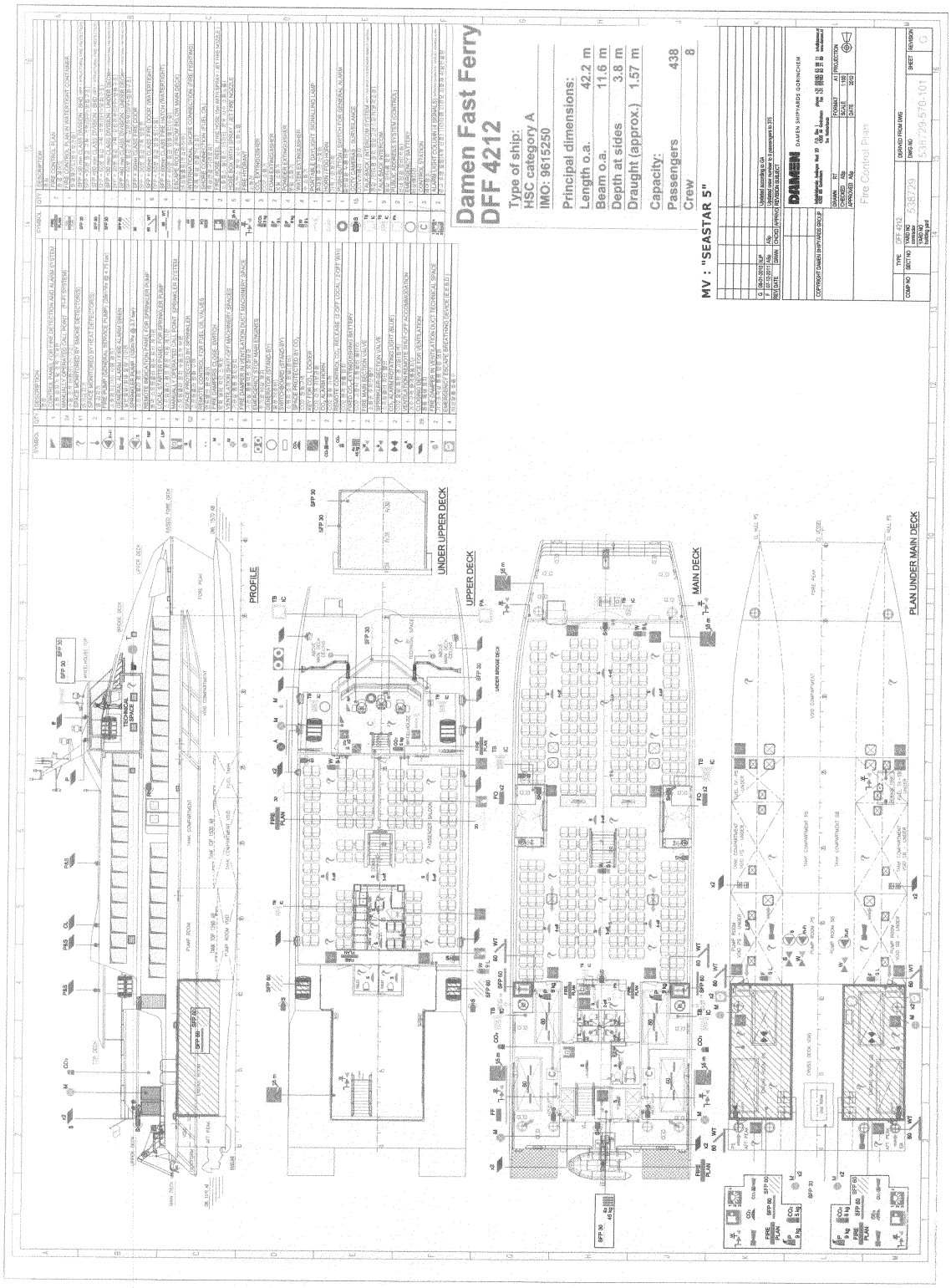
Damen Fast Ferry
DFF 4212
Type of ship:
HSC category A
IMO: 9615250
Principal dimensions:
Length o.a. 42.2 m
Beam o.a. 11.6 m
Depth at sides 3.8 m
Draught (approx.) 1.57 m
Capacity:
Passengers 438
Crew 8
MV : "SEASTAR 5"
PROFILE
UNDER UPPER DECK
UPPER DECK
MAIN DECK
PLAN UNDER MAIN DECK
Fire Control Plan

[붙임5] 선원법정교육 목록

교 육 명	구분 및 교육기간	유효 기간	관 련 법 령
기초안전교육	4.5일/재교육 2일	5년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상급안전교육	구명정(재) / 3(0.5)일	5년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상급소화(재) / 3(1)일	5년	
	응급처치(재) / 3(0.5)일	5년	
	고속구조정 / 1일	5년	
	구명정+소화+응급(재) / 5(2)일	5년	
해양오염방지 관리인교육	정규 / 3일	5년	해양환경관리법 제32조, 제12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동법시행규칙 제78조,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재・보충 / 2일	5년	
레이더 시뮬레이션 교육	시뮬레이션 / 5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레이더 / 2일	없음	
리더쉽 및 팀워크 교육	3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리더쉽 및 관리기술 직무 교육	3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여객선교육	기초(재) / 2(1)일	5년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상급(재) / 4(2)일	5년	
여객선 직무교육	3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의료관리자 교육	자격취득교육 / 5일	없음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보수교육 / 2일	5년	
GMDSS 직무인정교육 3/4급통신사	기사반 / 5일	없음	전파법 시행령부칙 제5조
	전파전자 3급 통신사/5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전파전자 4급 통신사/3일	없음	
면허갱신교육	3급 이상 / 3일	5년	선박직원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4급 이하 / 2일	5년	
	통신 / 1일	5년	
당직부원교육	항해당직부원/5일 자동화선박 운항당직/1월	없음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면허전환교육	3급 해기사/ 5일 4급 또는 5급 / 3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14조의2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붙임6]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개정 2023.02.27.>

[별지 제2호서식]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여객 전용 여객선)							
년 월 일 시 분 출항							
선 명				선박번호			
항로 및 항해구역				항해예정시간		시간 분	
흘 수	선수(船首): m, 중앙: m, 선미(船尾): m						
최대 승선인원 (선박검사증서)	명	여객	명	선원	명	임시 승선자	명
실제 승선인원	(①+②+③+Ⓐ+Ⓑ)명	여객	(①+②+③)명 대인 ① 명 소인 ② 명 유아 ③ 명	선원	Ⓐ 명	임시 승선자	Ⓑ 명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예	점검결과 아니오	비 고
1. 선장·기관장 및 운항관리자			
가. 항해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	
나. 해상기상 및 항행정보를 파악하였는가?	☐	☐	
다. 운항관리규정상 법정승무원의 승선을 확인하였는가?	☐	☐	
라. 선교 항해·통신 장비가 정상 작동하는가? ☐ 레이더 ☐ 컴퍼스 ☐ GPS ☐ AIS ☐ 음향측심기 ☐ 항해등 ☐ 조타기 ☐ 선내 방송설비 ☐ VHF ☐ 기적 ☐ e-Nav 시스템 ☐ 전자해도시스템 ☐ 그 밖의 설비( )	☐	☐	
마. 주기 및 발전기, 그 밖의 기기는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 운전상태 또는 사용 준비 상태 확인 - 연료유공급탱크 충전(充塡) 등 필요한 연료유 확보 확인	☐	☐	
바. 기관실 내 위험요소는 제거 되었는가? ☐ 이동물 고정 ☐ 인화·발화물질의 이동보관, 격리, 제거 ☐ 누수·누유 여부 등	☐	☐	
사. 선내 소화·구명설비는 즉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가? * 구명조끼, 소화기 등은 표본 점검 가능	☐	☐	
아. 통로 장애물 유무 확인 등 비상탈출로는 확보되었는가?	☐	☐	
자. 선체상태, 만재흘수선 등을 통해 감항성을 확인하였는가?	☐	☐	
차. 수하물이 안전하게 적재 및 고박 되었는가?	☐	☐	
카. 선내 위험물이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적재 및 보관 되었는가?	☐	☐	
타. 여객명부를 본선에 수령 하였는가?	☐	☐	
파. 선원이 알코올을 음용하지 않았는가? *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자에 한해 육안점검 등 시행	☐	☐	
2. 선장·기관장			
가. 갑판설비 등은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 계선설비 ☐ 양묘(揚錨)설비 ☐ 그 밖의 설비( )	☐	☐	
나. 선박추진에 관계가 있는 기관의 예비품이 확보되었는가?	☐	☐	
다. 타기실 내 누수·누유 여부 및 빌지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라. 여객실 등 여객구역에 구명조끼 등 비품이 비치되어 있고 청결한가?	☐	☐	
마. 승무원이 각 해당 부서에 배치되었는가?	☐	☐	
바. 육상 작업원 등 방선자의 하선 및 수상한 자가 없는지 확인하였는가?	☐	☐	

결함사항 :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인명과 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출항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선 장 (인)

선장 등과 위 내용을 점검 및 확인합니다.

운항관리자 (인)

주: 점검 후 결과란 "예", "아니오" 에 √ 표시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 표시한다.

[붙임7] 선박계획정비표

PMS CHECK LIST

M/V SEASTAR 5

DECK PART

DECK. P. M. S 년간 계획표

SHIP'S NAME : SEASTAR 5

DATE :

EQUIPMENTS	INTERVAL	ITEMS	RECORD DATE CARRIED OUT											
			1	2	3	4	5	6	7	8	9	10	11	12
WHISTLE	1M	AUTO 작동상태 점검												
		MANUAL 작동 상태 점검												
WINDLASS	6M	NORMAL OIL TEMP'(-40˚C ~ +90˚C)												
	6M	ANCHOR, CABLE 고정상태 점검												
	3M	GREASE UP BEARING METAL												
	3M	OIL LEAK, GREASING, GEAR COMPOUNDING												
	1M	CLUTCH CONDITION,BREAK CONTROL LEVER												
	1M	THE LEVER CONTROL VALVE												
	1M	MARKING OF DIRECTION												
	1M	BREAK TEST, IF DONE												
NAVIGATION LIGHT	1M	모든 항해등 정상작동 점검												
	1M	LAMP FAILURE ALARM 점검												
	1M	N.U.C LAMP 정상작동 점검												

SEASPOVILL CO.,LTD

SHIP'S NAME : SEASTAR 5 DATE :

EQUIPMENTS	INTERVAL	ITEMS	RECORD DATE CARRIED OUT											
			1	2	3	4	5	6	7	8	9	10	11	12
SEARCH LIGHT	1M	베어링 및 피벗포인트에 GREASING												
RADAR	1M	스캐너 표면 청소												
	1M	VENT FAN AIR FILTER 청소												
	1M	스캐너 스위치 작동상태 확인												
	3M	스캐너 베어링 및 기어링의 윤활 상태												
	3M	스캐너 고정부 (볼트, 너트) 상태 점검												
	3M	POWER SUPPLY UNIT 청소												
	2000 ~ 3000H	마그네트론 교체												
GYRO	1M	REPEATER 조명상태 점검												
MAGNETIC COMPASS	1M	BOWL 내의 기포 확인 점검												
	1M	전구 상태 확인												
GPS	1M	LCD화면, ANTENNA,POWER CABLE 연결상태 확인 및 소제												
	1M	ANTENNA 고정상태 확인												
SPEED LOG	1W	LCD 액정표면 이물질 제거												

SEASPOVILL CO.,LTD

SHIP'S NAME : SEASTAR 5 DATE :

EQUIPMENTS	INTERVAL	ITEMS	RECORD DATE CARRIED OUT											
			1	2	3	4	5	6	7	8	9	10	11	12
SPEED LOG	1M	GROUND TERMINAL 연결상태확인 및 소제												
	1M	수선하부 센서 해양생물 부착여부 확인 및 소제												
ECHO SOUNDER	1W	LCD 액정표면 이물질 제거												
	1M	GROUND TERMINAL 연결상태확인 및 소제												
	1M	수선하부 센서 해양생물 부착여부 확인 및 소제												
	1Y	CABLE 파손여부 검사 및 연결상태 확인												
AIS	1W	LCD 액정표면 이물질 제거												
	1M	GROUND TERMINAL 연결상태확인 및 소제												
	1M	CABLE 연결부 상태 확인												
NAVTEX	1W	DISPLAY UNIT CONNECTER 고정상태확인												
	1W	LCD 액정표면 이물질 제거												
	1M	GROUND TERMINAL 연결상태확인 및 소제												
ECDIS	1W	LCD 액정표면 이물질 제거												
	1M	FILTER ON PROCESSOR UNIT 소제												

SEASPOVILL CO.,LTD

SHIP'S NAME : SEASTAR 5 DATE :

EQUIPMENTS	INTERVAL	ITEMS	RECORD DATE CARRIED OUT											
			1	2	3	4	5	6	7	8	9	10	11	12
ECDIS	6M	CABLING 의 연결상태 및 손상상태여부 확인												
수선하부	1M	수선하부 선체, 각종 센서 확인 WATER JET, M.D.I CHECK												

SEASPOVILL CO.,LTD

PMS ITEM (CHECK LIST)

선명 : SEA STAR 5

ENGINE PART

담당자 : 1등 기관사
책임자 : 기 관 장

MAIN ENGINE (MTU 16V 2000 M72 / 2250RPM , 1440KW)

ITEM FOR MAINTENANCE / INSPECTION	정비주기	1월계획	2월계획	3월계획	4월계획	5월계획	6월계획	7월계획	8월계획	9월계획	10월계획	11월계획	12월계획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FUEL FILTER DRAIN	DAILY												
ENGINE OPERATION	DAILY												
AIR FLOW CONTROL FLAP	250 H												
ENGINE OIL 교환 (원심필터+ 카테고리 2) (카테고리1-250H/카테고리2-500H)	500H (1000H)												
ENGINE OIL FILTER 교환 (필요시 SAMPLE 채취 검사)	250 H												
SEA STRAINER 개방소제/ZINC점검	1M												
BREATHER FILTER	250 H												
CRANKCASE 1차필터	500 H												
원심필터 개방 소제	500 H												
FUEL DUPLEX FILTER	500 H												
ENGINE F.W 약품 TEST & SAMPLE 분석 의뢰	1000 H												
EXH' & INTAKE VALVE CEARANCE CHECK	1000 H												

ITEM FOR MAINTENANCE / INSPECTION	정비주기	1월계획	2월계획	3월계획	4월계획	5월계획	6월계획	7월계획	8월계획	9월계획	10월계획	11월계획	12월계획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COALESCER FUEL FILTER	3000 H												
ENGINE COOLANT FILTER	3000 H												
AIR·FILTER	3000 H												
ENGINE WIRING CHECK	4000 H												
CYLINDER CHAMBER CHECK	6000 H												
HEAD 정비	6000 H												
T/C 개방정비	6000H												
INJECTOR 신환	6000 H												
F.O HP펌프	12000H												

COMPONENT MAINTENANC 6000 H

COOLANT CHANGE / PIPE FLUSH , CHECK ROCKER ARM , CHECK VALVE BRIDGE , CHECK COOLANT THERMOSTAT , BATTERY CHARGER GENERATOR

CLEAN COOLANT COOLER , ENGINE MOUNTING BOLT , CHECK VIBRATION DAMPER , ECU SYSTEM CHECK , MONITORING SYSTEM CHECK ,

CLEAN AIR PIPE , EXHAUST T/C O/H , H.P PUMP O/H , ENGINE COOLANT PUMP O/H , ENGINE RAW WATER PUMP O/H , ENGINE COOLANT PRE-HEATER O/

CLEAN INTER COOLER , SEA CHEST VALVE O/H , SEA STRAINER 소제 , STARTER MOTOR , CHECK ENGINE ALIGNMENT , CLEAN OIL HEAT EXCHANGER

CLEAN FUEL SYSTEM

CYLINDER HEAD O/H 12000 (INSPECT PISTON CROWN ,LINER)
DISASSEMBLY ENGINE COMPLETELY REPLACE ALL ELASTOMER COMPONENTS AND SEALS , REPLACE AUXILIARY PTO ANTIFRICTION BEARINGS
REPLACE PISTON RINGS , REPLACE CONROD BEARING , REPLACE CRANKSHAFT BEARINGS , REPLACE CYLINDER LINERS
REPLASE HIGH-PRESSURE FLAP , FUEL PUMP , REPLACE ACTUATING CYLINDER FOR FLAPS , REPLACE ACTUATING CYLINDERS FOR EXHAUST FLAPS
REPLACE EXHAUST FLAP BEARINGS , OVERHAUL STARTER , OVERHAUL BATTELY-CHARGING
REPLACE FUEL PRESSURE RELIEF VALVE , REPLACE HIGH-PRESSURE FUELSENSOR , REPLACE WATER FILTER ,
REPLACE WIRE MESHES OF CRANKCASE BREATHER

GENERATOR ENGINE (CATERPILLAR / C4.4TA AUX' ENG' / 93.6KW / 1500RPM)

ITEM FOR MAINTENANCE / INSPECTION	정비주기	1월계획	2월계획	3월계획	4월계획	5월계획	6월계획	7월계획	8월계획	9월계획	10월계획	11월계획	12월계획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ENGINE OIL 신환	500 H												
L.O FILTER 신환	500 H												
챔버 필터 교환 및 소제	500H												
AIR INTAKE PIPE / 필터 CHECK	500 H												
AIR COOLER SEA SIDE 오손 검사 필요시 소제	1000 H												
SEA WATER PUMP IN SIDE 검사	1000 H												
RACOR FUEL FILTER 신환	500 H												
FUEL SUPPLY LINE 점검	500 H												
ENGINE F.W 약품 TEST & 분석 의뢰	500 H												
FUEL DUPLEX FILTER 신환 (필터 전환 사용시 각 500 H)	500 H												
AIR FILTER (신환)	2000 H												
F.W COOLER SEA SIDE 개방 소제	1000H												
EXH' & INTAKE VALVE CLEARANCE CHECK	1000H												
해수 펌프 BELT TENSION CHECK (필요시 교환)	1000H												
F.W 신환 및 약품투입	2500H												
	1Y												

ITEM FOR MAINTENANCE / INSPECTION	정비주기	1월계획	2월계획	3월계획	4월계획	5월계획	6월계획	7월계획	8월계획	9월계획	10월계획	11월계획	12월계획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NOZZLE 신환	12000H 필요시												
S.W PUMP O/H	12000 H												
F.W PUMP O/H	12000 H												
CYLINDER HEAD O/H	12000 H												
ENGINE O/H	12000 H												

GEAR BOX (Reintjes Gearbox WLS 730)

ITEM FOR MAINTENANCE / INSPECTION	정비주기	1월계획	2월계획	3월계획	4월계획	5월계획	6월계획	7월계획	8월계획	9월계획	10월계획	11월계획	12월계획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ALL BOLT CONNECTION RE-TIGHT	500 H												
SHAFT POSITION CHECK	500 H												
OIL 신환	1000H (6M)												
OIL FILTER 소제 (필터전환 각3M 사용)	1000H (6M)												
FLEXIBLE COUPLING VISUAL CHECK	4000H												
TRANSMISSION MOUNTINGS VISUAL CHECK	4000H												
CONTROL UNIT CHECK	4000H												
OIL COOLER 소제	4000H 1Y												
INPUT SHAFT SEAL CHECK	4000H												
VULKAN VULASTIK-L coupling	15000H 10Y												
OIL PUMP O/H	20000H												
GEAR BOX O/H	20000H												

ELECTRICAL POWER SYSTEM

ITEM FOR MAINTENANCE / INSPECTION	정비주기	1월계획	2월계획	3월계획	4월계획	5월계획	6월계획	7월계획	8월계획	9월계획	10월계획	11월계획	12월계획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조타실 윈도와이퍼 릴레이 점검	1M												
비상등/ 비상전원테스트	1M												
절연 저항 검사	1Y												
MSB (발전기 주 전원 시스템)	5Y												

PUMP SYSTEM

ITEM FOR MAINTENANCE / INSPECTION	정비주기	1월계획	2월계획	3월계획	4월계획	5월계획	6월계획	7월계획	8월계획	9월계획	10월계획	11월계획	12월계획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FIRE PUMP MAKE:AZCUE TYPE:CA-80/15A 28m3,4.75BAR													
PUMP O/H	5Y												
PRESSURE TEST	1M												
POTABLE BILGE PUMPS, ABS 10m3/h													
PUMP O/H (임펠러점검/코일세척)	5Y												
FRESH WATER PUMP MAKE:HEADHUNTER													
TANK 개방소제	2Y												
PUMP O/H	5Y												
SEA WATER PUMP MAKE:HEADHUNTER													
PUMP O/H	5Y												
SUMP DRAIN PUMP MAKE: CAFFINI, 2.4m3/H,1BAR													
PUMP O/H	5Y												
작동 TEST(CKECK V/V PLATE)	6M												
BILGE PUMPMAKE:GUSHER, EHALE30,165L/M													
PUMP O/H	5Y												
FIRE DETACTOR MAKE:APOLLO	1M												
FIRE DAMPER	1M												
SEA CHAST 자동 밸브 작동 TEST	1M												

ITEM FOR MAINTENANCE / INSPECTION	정비주기	1월계획	2월계획	3월계획	4월계획	5월계획	6월계획	7월계획	8월계획	9월계획	10월계획	11월계획	12월계획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WINDLESS SYSTEM	1Y												
BOAT CRANE	1Y												
E/R CO2 INSTALLATION SYSTEM	1Y												
E/R FAN MAKE:SALOR,HU40	5Y												
ALL ZINC ANODE	1Y												
SPRINKLER SYSTEM	1Y												
TOILET FAN MAKE:SALOR,CK160-C	5Y												
AFT PECK FAN MAKE:SALOR,CK125-C	5Y												
PUMP/R FAN MAKE:SALOR,HU-30	5Y												
OILY BILGE SEPARATOR (RWO Marine water technologe Oily water separator SKIT/S-DEB)													
15 PPM TEST	1M												
내부 검사 OIL SENSOR 소제 점검	1Y												
필터 신환 (필요시)	2Y												

ITEM FOR MAINTENANCE / INSPECTION	정비주기	1월계획	2월계획	3월계획	4월계획	5월계획	6월계획	7월계획	8월계획	9월계획	10월계획	11월계획	12월계획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SEWAGE SYSTEM													
PUMP O/H	5Y												
TANK 개방 점검	5Y												
각부 TANK LEVEL ALARM 점검 (연료/청수/분뇨)	3M												

에어컨

HVAC SYSTEM (SALOR D-TYPE 300000BTU/MARIN AIR SYSTEM , MCW300SRC)

ITEM FOR MAINTENANCE / INSPECTION	정비주기	1월계획	2월계획	3월계획	4월계획	5월계획	6월계획	7월계획	8월계획	9월계획	10월계획	11월계획	12월계획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객실 에어필터 소제	1M												
COMPRESSOR 점검 (외주업체).	1 Y												
냉매 점검 보충													
순환수 부동액 점검 및 보충	6M												
S.W PUMP O/H	3Y												
C.W PUMP O/H	3Y												
BOILER SYSTEM (Kabola B-tap)													
Drain the water from the water trap	1W	매주	매주	매주	매주	매주	매주	매주	매주	매주	매주	매주	매주
Clean the boiler	1Y												

BATTERY SYSTEM

MAKE: MASTERVOLT,24/50

ITEM FOR MAINTENANCE / INSPECTION	정비주기	1월계획	2월계획	3월계획	4월계획	5월계획	6월계획	7월계획	8월계획	9월계획	10월계획	11월계획	12월계획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BATTERY VOLTAGE & CABLE CONNECTION CHECK	1M(1W)												
밧데리 교환(필요시)	2Y												
ENGINE BATTERY CHECK	1M(1W)												
EMCY BATTERY CHECK	1M(1W)												
RADIO BATTERY CHECK	1M(1W)												
MONITOR BATTERY CHECK	1M(1W)												

M.D.I (TRIM TAP)

VT MARITIME DYNAMICS MD-R-600-68, REV E

ITEM FOR MAINTENANCE / INSPECTION	정비주기	1월계획	2월계획	3월계획	4월계획	5월계획	6월계획	7월계획	8월계획	9월계획	10월계획	11월계획	12월계획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시행일자
L.O LEVEL CHECK	1 W												
PUMP PRESSURE SETTING CHECK	1 W												
운전중 PRESSURE CHECK	1 W												
MAXIMUM RESERVOIR 온도 CHECK	1 W												
각부 BOLT 상태 확인	1 M												
HOSE & CABLE 확인	1 M												
ACCUMULATOR CHARGE PRESSURE CHECK	1 M												
S.W COOLER 소제	6 M												
PRESSURE FILTER 교환	1 Y												
AIR BREATHER ELEMENT 교환	1 Y												
HYD' OIL 신환	2 Y												
ZINC 교환	1Y												

[붙임8] 비상부서배치표<개정2019.09.16.><개정2020.11.25.><개정2021.12.06>

비 상 부 서 배 치 표 (MUSTER LIST)

Ferry ship : SEASTAR 5 (승선인원 : 5명)

구 분	소화부서	퇴선부서	구명뗏목	비상조타 부서	수색인명구조 부서	유출방제부서	주기관 사고	침수(방수)부서	충돌(좌초)방수 부서	밀폐구역사고 대응부서	안전위험범행 대응
직 책	임무 및 지참물	임무 및 지참물	번호 및 위치	임무 및 지참물	임무 및 지참물	임무 및 지참물	임무 및 지참물	임무 및 지참물	임무 및 지참물	임무 및 지참물	임무 및 지참물
선 장	선교/총지휘 외부통신.회사보고 무전기	선교/총지휘 선내방송.외부통신 2-W VHF.무전기	NO.1 지휘 (우현 선수)	선교/총지휘 외부통신 회사보고. 무전기	선교/총지휘 외부통신 회사보고.무전기	선교/총지휘 외부통신 회사보고.무전기	선교/총지휘 외부통신 회사보고.무전기	선교/총지휘 외부통신 회사보고.무전기	선교/총지휘 외부통신 회사보고.무전기	선교/총지휘 외부통신 회사보고.무전기	선교/총지휘 외부통신 회사보고.무전기
1 등 항해사	객실화재지휘 안전등.소화기 무전기	1 층객실 낙하신호탄.무전기 2-W VHF. SART	NO.2 지휘 (좌현 선수)	현장지휘 투묘준비 무전기	현장갑판 2-W VHF.구명줄 안전등.무전기	현장 방재장비 무전기	여객관리 투묘준비 무전기	현장지휘 탱크측심 안전등.무전기	현장지휘 탱크측심 안전등.무전기	현장지휘 안전등,구명줄 무전기	현장지휘 무전기 쇠파이프
항해사 또는 기관사	여객관리.선내방송 의약품.무전기	퇴선장소준비 중요서류.의약품 무전기/모포	NO.3 지휘 (우현 선미)	선내방송 여객관리 무전기	여객관리 선내방송 무전기/의약품	선내방송 여객관리 무전기	선내방송 여객관리 무전기	선내방송 여객관리 무전기,방수자재	선내방송 여객관리 무전기,방수자재	선내통신 여객관리 무전기	선내통신 여객관리 의약품.무전기
기관장	기관실화재지휘 CO2/스프링클러 조작 소화기.무전기	퇴선장소준비 EPIRB/중요서류 2-W VHF.무전기	NO.4 지휘 (좌현 선미)	선교/선장 보좌 기관지휘 무전기	선교/선장보좌 기관지휘 무전기	현장지휘 무전기	선교/기관실 기관지휘 무전기	선교/선장보좌 기관지휘 무전기	선교/선장보좌 기관지휘 무전기	선교/선장보좌 기관지휘 무전기	선교/선장보좌 기관지휘 무전기
1 등 기관사	현장 통풍,유류차단.전원차단 소화호스.무전기	구조정 방수복.안전등 SART.무전기	구조정	우현,좌현 기관실 무전기	구조정 방수복.안전등 구명부환.무전기	현장 방제장비 무전기	기관실 무전기	현장 안전등.배수펌프 연료측심,무전기	현장 안전등.배수펌프 연료측심,무전기	현장 안전등,통풍기 무전기	진압요원 쇠파이프,포승줄 무전기

REMARK<삭제 2021.12.06>

<비상배치 및 조치절차>
현장발견(외침) ⇒ 보고(응급처치) ⇒ 비상신호 ⇒ 비상배치 ⇒ 조치 해제

비상시 여객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승무원 및 선내방송의 지시에 따른다.

<비 상 경 보 신 호>
1.비상배치신호 : ― ― ― ― ― ― ― ――― (단음 7 회, ―장음 1 회)

퇴선신호 : ――― (연속음 약 30 초)

2.선내방송은 "□□ 구역 □□ 발생 □□ 비상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비상훈련인 경우는 비상 신호를 발한 후 선내방송 서두에 "훈련"을 첨언한다. 단 집합장소는 상황에 따라 별도로 지정하여 발령한다.

1.기타 비상배치는 비상대응절차에 의거 그 당시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한다.

2.구명 및 소화설비의 관리 : 항해사 & 기관사

3.응급처치기구 및 의료자재 관리 : 항해사

4. 비상경보 발생 시 무전기의 채널은(03) 로 한다.

5. 비상배치표는 변경사항 발생 시 출항전에 작성되어야 한다.

MASTER :

비 상 부 서 배 치 표 (MUSTER LIST)

Ferry ship : SEASTAR 5 (승선인원 : 6명)<개정2021.12.06>

구 분	소화부서	퇴선부서	구명뗏목	비상조타 부서	수색인명구조 부서	유출방제부서	주기관 사고	침수(방수)부서	충돌(좌초)방수 부서	밀폐구역사고 대응부서	안전위험범행 대응
직 책	임무 및 지참물	담당임무 및 지참물	번호 및 위치	임무 및 지참물	임무 및 지참물	임무 및 지참물	임무 및 지참물	임무 및 지참물	임무 및 지참물	임무 및 지참물	임무 및 지참물
선 장	선교/총지휘 외부통신 및 회사보고 무전기 지참	선교/총지휘 내부,외부 통신 2-W VHF,무전기	NO.1(우현 선수)	선교/총지휘 외부통신, 회사보고 무전기	선교/총지휘 외부통신 회사보고,무전기	선교/총지휘 외부통신 회사보고,무전기	선교/총지휘 외부통신 회사보고,무전기	선교/총지휘 외부통신 회사보고,무전기	선교/총지휘 외부통신 회사보고,무전기	선교/총지휘 외부통신 회사보고,무전기	선교/총지휘 외부통신 회사보고,무전기
1 등항해사	소화현장지휘 안전등/무전기 지참	1.2 층 좌현선수 유도 낙하신호탄,SART 2-W VHF,무전기	NO.2(좌현 선수)	선수 투묘준비 무전기	현장지휘(구조정) 2-W VHF,모포 안전등,무전기	방제현장 기관장보좌 무전기	선수지휘 투묘준비 무전기	현장지휘 안전등 무전기	현장지휘 측심의 준비 안전등,무전기	현장지휘 안전등 무전기	현장지휘 가스총 무전기
항해사 또는 기관사	화재현장,소화기 및 소화호스 준비	1 층 우현선미 유도 안전등,모포 무전기	NO.3(우현 선미)	선수 투묘준비 여 객 관 리,무전기	현장갑판 구명부환,구명줄 무전기	방제 현장 흡착포,빗자루 무전기	선수 투묘준비 무전기	객실,현장 방수매트,안전등 무전기	객실,현장 방수매트,안전등 무전기	현장 여객관리 안전등	현장 진압요원 쇠파이프 무전기
기관장	기관실총지휘 CO2 조작/방출 무전기 지참	1 층 좌현선미 유도 EPIRB/중요서류 2-W VHF,무전기	NO.4(좌현 선미)	선교/선장 보좌 기관실총지휘 무전기	선교/선장보좌 기관실 총지휘 무전기	현장 총지휘 무전기	선교/선장보좌 기관실 총지휘 무전기	선교/선장보좌 기관실 지휘 무전기	선교/선장보좌 기관실 지휘 무전기	선교/선장보좌 기관실 지휘 무전기	선교/선장보좌 기관실 지휘 무전기
1 등기관사	통풍 및 유류차단 소화기기운전 무전기 지참	구조정 방수복,안전등 구명부환,무전기	구조정	우현전자변 조작 무전기	기관 당직	방제현장 방제기기조작 흡 착 포 , 무전기	우현기관실 무전기	현장 안전등,배수펌프 무전기	현장 안전등,배수펌프 무전기	현장 안전등 무전기	현장 진압요원 쇠파이프,모포 무전기
항해사 또는 기관사	화재 현장 소화 호스 준비 무전기 지참	1.2 층 우현선수 유도 SART,안전등 무전기	NO.1(우현 선수)	좌현전자변 조작 무전기	현장갑판 구명부환,구명줄 모포,무전기	방제현장/기관실 걸레,포대 무전기	좌현기관실 무전기	현장 안전등,방수자재 연료측심,무전기	현장 안전등,방수자재 연료측심,무전기	현장 통풍기,구명줄 무전기	현장 진압요원 쇠파이프,포승줄 무전기

Remark : 선박직원 결원 시 훈련 및 자격 있는 매점선원으로 대체(예시 : 기초안전교육 등 수료)<개정 2021.12.06>

<비상배치 및 조치절차>
현장발견(외침) ⇒ 보고(응급처치) ⇒ 비상신호 ⇒ 비상배치 ⇒ 조치 해제

비상시 여객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승무원 및 선내방송의 지시에 따른다.

<비 상 경 보 신 호>
1.비상배치신호 : ― ― ― ― ― ― ― ――― (단음 7 회, ―장음 1 회)

퇴선신호 : ――― (연속음 약 30 초)

2.선내방송은 "□□ 구역 □□ 발생 □□ 비상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비상훈련인 경우는 비상 신호를 발한 후 선내방송 서두에 "훈련"을 첨언한다. 단 집합장소는 상황에 따라 별도로 지정하여 발령한다.

1.기타 비상배치는 비상대응절차에 의거 그 당시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한다.

2.구명 및 소화설비의 관리 : 항해사 & 기관사

3.응급처치기구 및 의료자재 관리 : 항해사

4. 비상경보 발생 시 무전기의 채널은(03) 로 한다.

5. 비상배치표는 변경사항 발생 시 출항전에 작성되어야 한다.

MASTER :

비 상 부 서 배 치 표 (MUSTER LIST)

Ferry ship : SEASTAR 5 (승선인원 : 7명)<개정2021.12.06>

구 분	소화부서	퇴선부서	구명뗏목	비상조타 부서	수색인명구조부서	유출방제부서	주기관 사고	침수(방수)부서	충돌(좌초)방수부서	밀폐구역사고 대응부서	안전위험범행대응
직 책	임무 및 지참물	담당임무 및 지참물	번호 및 위치	임무 및 지참물	임무 및 지참물	임무 및 지참물	임무 및 지참물	임무 및 지참물	임무 및 지참물	임무 및 지참물	임무 및 지참물
선 장	선교/총지휘 외부통신 및 회사보고 무전기 지참	선교/총지휘 내부,외부 통신 2-W VHF,무전기	NO.1(우현선수)	선교/총지휘 외부통신,회사보고 무전기	선교/총지휘 외부통신 회사보고,무전기	선교/총지휘 외부통신 회사보고,무전기	선교/총지휘 외부통신 회사보고,무전기	선교/총지휘 외부통신 회사보고,무전기	선교/총지휘 외부통신 회사보고,무전기	선교/총지휘 외부통신 회사보고,무전기	선교/총지휘 외부통신 회사보고,무전기
1 등항해사	소화현장지휘 안전등/무전기 지참	1.2 층 좌현선수 유도 낙하신호탄,SART 2-W VHF,무전기	NO.2(좌현선수)	선수 투묘준비 무전기	현장지휘(구조정) 2-W VHF,모포 안전등,무전기	방제현장 기관장보좌 무전기	선수지휘 투묘준비 무전기	현장지휘 안전등 무전기	현장지휘 측심의 준비 안전등,무전기	현장지휘 안전등 무전기	현장지휘 가스총 무전기
항해사 또는 기관사	화재현장,소화기 및 소화호스 준비	1 층 우현선미 유도 안전등,모포 무전기	NO.3(우현선미)	선수 투묘준비 여객관리, 무전기	현장갑판 구명부환,구명줄 무전기	방제 현장 흡착포,빗자루 무전기	선수 투묘준비 무전기	객실,현장 방수매트,안전등 무전기	객실,현장 방수매트,안전등 무전기	현장 여객관리 안전등	현장 진압요원 쇠파이프 무전기
항해사 또는 기관사	선교/선장 보좌 여객관리 및 선내통신 안전등.무전기.의약품	2 층창측및선미 유도 선내통신,중요서류 의약품,무전기	NO.4(좌현선미)	선교/선내통신 여객관리 무전기	선내방송 여객관리 무전기,의약품	선내방송 여객관리 무전기	선내방송 여객관리 무전기	선내방송 여객관리 무전기	선내방송 여객관리 무전기	선내방송 여객관리 무전기	선내방송 여객관리 무전기
기관장	기관실총지휘 CO2 조작/방출 무전기 지참	1 층 좌현선미 유도 EPIRB/중요서류 2-W VHF,무전기	NO.4(좌현선미)	선교/선장보좌 기관실총지휘 무전기	선교/선장보좌 기관실 총지휘 무전기	현장 총지휘 무전기	선교/선장보좌 기관실 총지휘 무전기	선교/선장보좌 기관실 지휘 무전기	선교/선장보좌 기관실 지휘 무전기	선교/선장보좌 기관실 지휘 무전기	선교/선장보좌 기관실 지휘 무전기
1 등기관사	통풍 및 유류차단 소화기기운전 무전기 지참	구조정 방수복,안전등 구명부환,무전기	구조정	우현전자변 조작 무전기	기관 당직	방제현장 방제기기조작 흡착포,무전기	우현기관실 무전기	현장 안전등,배수펌프 무전기	현장 안전등,배수펌프 무전기	현장 안전등 무전기	현장 진압요원 쇠파이프,모포 무전기
항해사 또는 기관사	화재 현장 소화 호스 준비 무전기 지참	1.2 층 우현선수 유도 SART,안전등 무전기	NO.1(우현선수)	좌현전자변 조작 무전기	현장갑판 구명부환,구명줄 모포,무전기	방제현장/기관실 걸레,포대 무전기	좌현기관실 무전기	현장 안전등,방수자재 연료측심,무전기	현장 안전등,방수자재 연료측심,무전기	현장 통풍기,구명줄 무전기	현장 진압요원 쇠파이프,포승줄 무전기

Remark : 선박직원 결원 시 훈련 및 자격 있는 매점선원으로 대체(예시 : 기초안전교육 등 수료)<개정 2021.12.06>

<비상배치 및 조치절차>
현장발견(외침) ⇒ 보고(응급처치) ⇒ 비상신호 ⇒ 비상배치 ⇒ 조치 해제

비상시 여객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승무원 및 선내방송의 지시에 따른다.

<비 상 경 보 신 호>
1.비상배치신호 : ― ― ― ― ― ― ― ――― (단음 7 회, ―장음 1 회)

퇴선신호 : ――― (연속음 약 30 초)

2.선내방송은 "□□ 구역 □□ 발생 □□ 비상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비상훈련인 경우는 비상 신호를 발한 후 선내방송 서두에 "훈련"을 첨언한다. 단 집합장소는 상황에 따라 별도로 지정하여 발령한다.

1.기타 비상배치는 비상대응절차에 의거 그 당시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한다.

2.구명 및 소화설비의 관리 : 항해사 & 기관사

3.응급처치기구 및 의료자재 관리 : 항해사

4. 비상경보 발생 시 무전기의 채널은(03) 로 한다.

5. 비상배치표는 변경사항 발생 시 출항전에 작성되어야 한다.

MASTER :

[붙임9] 비상대응훈련 주기 및 시나리오<개정2019.09.16.><개정 2023.02.27.>

선내 비상훈련의 주기

훈 련 명	시 행 주 기	
선내숙지교육	수시	
소화 및 퇴선 훈련	매10일	
기름유출대처 훈련	매월	
비상조타 훈련	매3개월	
인명구조 훈련	해상추락	매6개월
	밀폐공간에서의 구조	매2개월
추진기관 고장 훈련	매 3개월	
충돌·좌초 및 전복 훈련		

비상대응훈련 시나리오

비상상황 유형

구분	비상상황 유형	보 고 기 준
1.	소화	선내 구역에서 발생한 화재로서, 확산되어 선박인원으로 제어 불가한 경우, 선박의 안전 및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퇴선	화재 및 충돌·좌초로 인하여 선박을 탈출하여야 할 경우
3.	비상조타	선박 조타기의 고장으로 선박이 조종불능의 상태가 되었을 때 본선의 위험여부, 본선자체수리여부, 타선 박 운항 상 지장이 없는지를 종합 판단하여 대처한다.
4.	인명구조	선원 및 여객이 해상에 빠진 경우 자선이 수색 및 구조를 하는 경우 및 타선박의 지원사항 포함
※ 통신유지 사항		SSB, VHF, 무선전화기 등 가능한 한 통신수단을 사용한다.

비상대응훈련 시나리오

1) 소화훈련요령 〈개정 2020.11.25〉

○ 화재사실을 인지한 최초 발견자는 “00장소에서 xx급 화재발생”이라고 소리를 질러(또는 비상벨을 누른다) 주위사람들에게 알리며, 근처에 있는 소화기를 최대 활용하는 등 화재초기 조치를 한다.

○ 최초 화재 발견자의 목소리를 인지한 다른 승무원은 비상벨의 작동과 함께 선교에 화재사실을 통보한다.

○ 선장은 비상신호 장음5회(적당한 간격 반복)와 함께 여객 동요방지를 위해 화재상황을 간략하게 방송 후 승무원에 “00장소에서 xx급 화재발생 총원 소화부서배치 붙어”라는 방송을 실시하는 등 선교에서 소화훈련을 총 지휘를 하며 기관사용이 가능한 경우 화재현장이 풍하쪽으로 위치하도록 조선한다.

○ 승무원은 각자 휴대품을 지참하고 화재현장으로 이동하면서 “00장소에 xx급 화재발생” 이라는 고함을 치면서 이동한다.(화재진압 중 부상우려 의료품 등 구비)

○ 현장에 도착한 현장반장은 화재 범위와 원인 등을 파악하여 선교의 선장에게 보고 한다. 기관실 이외의 화재 시 현장반장은 항해사가 담당하며, 자장식호흡구는 기관사가 착용한다.(기관실 화재의 경우 현장반장은 기관장이 담당하며, 자장식호흡구는 항해사가 착용한다). 이때 소화기로 진화가 어려울 경우 선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 선장은 초기진화로 화재 진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상황식별 : 화재종류, 화재위치, 선위, 기상조건 등 파악(풍향, 풍속, 파고, 조류 등), 주위에 가까이 있는 선박 확인

○ 현장반장(항해사)으로부터 화재상황을 보고 받은 선교의 선장은 소화작업에 적절한 지시를 하며, VHF, 무선전화기를 통하여 화재발생 현황 및 본선 조치사항, 구조 필요성 여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현장의 현장반장은 소화범위와 정도에 따라 적절한 소화작업에 임한다.

- 현장 진두지휘(비상배치표에 명시된 임무를 승무원들이 평소 정확히 숙지)

[화재현장의 전원차단, 통풍기차단 및 적절한 소화기를 이용한 화재진압 그리고 인접 격벽에 살수(화재확산 방지)]

○ 기관실 당직자는 발전기의 작동불가로 소화펌프의 작동이 불가능할시 비상소화펌프를 작동한다. 항해사는 소화전에 소화호스를 연결 화재종류에 따라 살수 등 조치한다.

○ 기관실 화재 시 화재의 범위가 확산될 때 선장은 신속·정확한 판단으로 고정식소화기의 사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자체 소화가 어려운 경우 소방선 수배, 소화장비의 보급 등 육상의 지원사항 및 퇴선여부 등을 결정하여, 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게 보고한다.

○ 선장으로부터 화재상황 보고를 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선장의 지원요청에 대한 관련기관에 보고 및 소방선 수배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화재진화가 완료되면 여객에게 안내방송을 실시한 후 현장반장은 화재발생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선교의 선장에게 보고 한다.

○ 선장은 화재의 잔존여부 확인을 위한 견시자 한명을 남겨두고, 상황 종료와 동시에 “소화부서배치 해제”란 방송을 실시한다.

○ 훈련종료 승무원은 선교로 집합하며 선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한다.

2) 퇴선훈련요령 〈개정2019.9.16〉 〈개정 2020.11.25〉

○ 선장은 본선의 상황에서 퇴선의 결정을 하면 비상신호(단음7회 후 장음1회) 및 여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현 위치에서 침착하게 대기하면서 다음 지시에 따라 행동하도록 안내방송 후 선내방송으로 “총원 퇴선부서배치 붙어”라는 방송을 실시한다.

○ 선장은 퇴선이 결정되면 VHF, 무선전화를 이용하여 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 본선의 승선인원 및 위치, 퇴선이유를 보고하여야 하며, 동시에 조난신호를 작동하여야 한다.

○ 선장으로부터 퇴선의 보고를 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관할관청(지방청, 관할 해양경찰서(119)에 보고하고 구조선의 파견여부 등 구조수단을 검토하여야 한다.

○ 퇴선신호 및 방송을 청취한 승무원은 휴대품을 들고 소집장소로 이동하면서 “총원 퇴선배치 붙어”라는 복창을 하면서 소집장소로 뛰어간다.

○ 승무원이 전부 소집되면 현장반장(항해사)은 인원보고를 선교의 선장에게 한다.

○ 기관장은 선박이 침몰가능성이 있다면 모든 연료탱크 주입구, 배출구를 폐쇄토록 조치 해상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 선교의 선장은 현장반장에게 구명뗏목 강하준비 명령을 내린다.

○ 선교의 퇴선명령이 내려지면 현장반장은 반원들에게 각각의 부여된 임무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게 한다.

○ 여객안내를 담당한자(항해사) 및 승무원은 질서 있게 퇴선위치로 안내한다.

○ 현장반장(항해사)은 구명뗏목의 연결 줄 및 자동 줄이 잘 매여져 있는지 확인한다.

○ 현장반장은 선장으로부터 구명뗏목의 강하지시에 의거 구명뗏목을 강하한다.

○ 현장반장은 여객 및 선원들이 본선에서 구명뗏목으로 쉽게 내려가기 위한 그물, 사다리, 줄 등을 설치한다.

○ 현장반장으로부터 퇴선준비 완료의 보고를 받은 선장은 퇴선 명령을 내린다.(퇴선신호 연속음30초)

○ 선장은 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게 퇴선사실을 통보하고 구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실행가능한 구조수단을 결정하고 본선 선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 선장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로부터 통보받은 구조방법을 본선 여객 및 선원들에게 통지하여 여객이 안정 및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선장은 “퇴선부서배치 해제” 선내방송 후, 전 승무원을 선교로 집합하여 훈련 결과를 평가한다.

3) 비상조타훈련 〈개정 2020.11.25〉

○ 선장은 조타기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즉시 선속을 감속하고 비상신호 (장음3회 반복)와 여객에게 간략하게 방송 후 승무원에게 선내방송을 통하여 “비상조타배치 붙어” 라는 방송을 실시하고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한다. ○ 전 승무원은 “비상조타배치 붙어”라는 복창을 하면서 현장으로 이동 한다. ○ 선장은 본선주위의 타선박의 통행량 확인 후 조타기 불능의 신호기류(주간에는 흑구2개, 야간에는 홍등 2개, 음향신호 단음 5회 이상)를 표시하여야 한다. ○ 선장은 현장반장(항해사)이 현장에 도착한 즉시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비상조타로 전환을 지시한다. ○ 현장반장은 선교 선장의 지시에 의거 비상조타로 전환하여 선교의 지시에 따라 비상 조타를 실시한다. ○ 기관장은 조타기를 점검 및 본선 자체수리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선교의 선장에게 보고 한다. ○ 선장은 조타기 고장으로 선박이 조종불능의 상태가 되면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게 즉시 VHF, 무선전화기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조타기고장 발생·원인, 자체 수리가능여부, 조타기수리 소요시간 등을 보고 한다. ○ 선장은 본선에서 조타기 자체수리가 불가할 경우 비상조타로 가까운 기항지까지 입항 가능여부와 필요한 경우 예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 선장으로부터 육상지원을 요청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적절한 지원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현장반장은 조타기 수리가 완료되면 선장에게 보고한다. ○ 선장은 수리완료 되면 비상조타를 종료하고, 여객에게 안내방송후 회사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게 조타기수리완료 보고(고장원인 포함)를 실시 후 “비상조타부서 배치 해제”란 방송과 함께 훈련상황을 종료한다. ○ 훈련 종료 후 승무원은 선교로 집합하며 선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한다.

4) 인명구조훈련요령 〈개정2019.9.16〉 〈개정 2020.11.25〉

○ 사람이 물에 빠진 것을 발견한자는 큰소리로 「OO에 사람이 물에 빠졌다」를 외쳐 선교 당직자에게 알린다.

○ 선교당직자는 물에 빠진 사람이 프로펠러에 말려들지 않도록 빠진 현으로 전타함과 아울러 기관을 정지시킨다.

○ 물에 빠진 사람에게 부근에 있는 라이프 링을 던져 주며, 가능하다면 야간에는 자기점화등, 주간에는 자기 발연 신호를 매달아 함께 던진다. 기타 현장 부근에 있는 나무 등의 부유물을 던질 수도 있다.

○ 선장은 선내 경보를 울리고, 필요하다면, 구명부서를 소집하고 적절한 구명기구(구명뗏목)를 준비 한다.

○ 가능한 한 높은 장소에 감시원을 배치, 물에 빠진 사람의 위치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

○ 선장은 물에 빠진 사람에로의 접근 조선 방법을 빨리 결정하고 또한 실행하여야 한다.

○ 선박 통행이 많은 장소에는 국제신호기“O"기를 올려 사람이 물에 빠져 있음을 알린다.

○ 필요하다면 긴급통신을 송신하여 타 선박들에 이 사실을 알리고 수색 및 구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물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선체와 떨어져서 구명부환을 잡고 그 위치에 머물러야 하며, 구명조끼 호각, 기타 유효한 신호 방법으로 위치 표시를 계속한다.

○ 구조반장(항해사)은 익수자와 본선간의 상대방위와 거리를 선교의 선장에게 보고한다.

○ 선장은 당시의 기상상황 및 익수자의 식별여부에 따라 적절한 조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선장은 적절한 조선으로 익수자를 본선의 풍하 측에 위치하도록 조선한다.

○ 구조반장은 익수자가 매달릴 수 있는 그물, 사다리, 줄등의 기타의 구조물을 가능한 한 선수에서 선미까지 설치한다.

○ 구조반장은 필요시 탐조등을 준비하고 익수자를 비춘다.

○ 구조반장은 익수자의 상태에 따라 구조반원의 투입여부를 판단하여 선장에게 보고한다.

○ 선장은 적절한 구조방법을 결정하여 구조반장에게 지시한다.

○ 익수자 위치·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할시, 실종시간을 추정하여 항로를 회항하면서 익수자를 탐색한다.

○ 선장은 익수자 발생 시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게 즉시 VHF, 무선전화기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보고한다.

○ 익수자 구조 후 의식불명으로 긴급 환자 이송 등 육상의 구조가 필요한 경우 익수자의 상태 및 본선 조치내용 등을 안전관리 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게 보고한다.

○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선장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선장은 익수자를 무사히 구조하고 건강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게 보고하고 “인명구조 배치해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 훈련종료 후 승무원은 선교로 집합하며 선장은 훈련 결과를 평가한다.

5) 기름유출대처훈련 〈신설 2020.11.25〉

○ 본선 급유 중 급유선의 송유호스 파열로 기름 유출

○ 최초 발견자는 “ XX장소에 기름유출 발생"을 크게 외친다. 선장은 즉시 급유선에 연락하여 급유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비상신호와 함께 오염 방제 부서 배치 발령(비상벨 단음7회, 장음1회)을 한다.

○ 선장은 기관장에게 본선에 비치된 방제 자재를 사용하여 선외로 기름이 유출되지 않도록 긴급 조치한 후 유출 원인과 유출량을 확인하고 현장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한다.

○ 기관장은 방제작업을 지휘, 갑판상의 유출유 방제작업에 임한다.

○ 선장은 현재의 상황(유출량 및 확산정도)을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본선 자체적으로 방제작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지원을 요청하고 지원요청을 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선장은 기름유출 구역을 포함한 본선에 화재의 위험이 없는지 점검하여야 한다.화재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여객이 승선해 있을 경우 여객이 동요하지 않도록 유도하여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지원요청을 한다.

○ 본선 자체적으로 방제작업이 완료되면 위 상황을 관계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현장을 마무리 한 후 상황을 종료한다.

○ 선외로 기름이 유출되어 해양오염 발생시 사고관련 자료를 작성, 사고보고서를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한다(선명, 사고유형, 사고일시, 장소, 사고개요, 추정 사고 원인, 확산 범위, 본선 조치 사항, 육상지원 요청 사항, 기타 참고사항)

○ 훈련 종료 후 선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한다.

6) 추진기관고장훈련 〈신설 2020.11.25〉

○ 항해 중 조타실의 엔진 오퍼레이팅 인디케이터에 알람이 울리며 엔진이 정지

○ 선장은 기관장에게 기관고장 원인과 수리 가능여부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필요시 비상투묘를 고려한다.

○ 기관장은 본선에 부속품이 있으므로 자체수리가 가능하고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선장에게 보고한다.

○ 선장은 즉시 비상부서배치신호를 발령하고 운전부자유 형상물 게시(즉, 주간에는 흑구2개, 야간에는 홍등2개, 음향신호 단음 5회 이상)및 VHF로 인근 선박에게 주위환기 방송을 실시하며 침로유지를 하여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시킨다.

○ 선내 방송으로 위 사실을 여객에게 알리고 동요하지 말 것과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줄 것을 요청한다.

○ 자체수리가 불가능 할 경우 선장은 비상 투묘 혹은 임의 좌주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여객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게 위 사실을 보고한 후 예선을 요청하며 선장은 안내방송을 통해 여객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동요하지 않고 안정을 유지하게 한다.

○ 선장으로부터 육상지원을 요청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적절한 지원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선장은 빠른 시간 내에 자체수리가 가능하다고 기관장에게 보고를 받고 주위 해상교통을 파악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DRIFTING하기 시작한다.

○ 선장은 기관장으로부터 수리가 완료되었고 엔진을 사용하여도 좋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게 엔진고장 수리완료 보고(고장원인 포함)를 하고 여객에게 위 사실을 안내방송을 통하여 알리며 “추진력 상실 부서배치 해제”라는 방송과 함께 훈련 상황을 종료한다.

○ 훈련 종료 후 선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한다

.

7) 출동·좌초 및 전복사고 훈련 〈신설 2020.11.25〉

(충돌시)

○ 선장은 즉시 엔진을 정지하고 비상경보 및 비상부서 배치 붙어 발령을 하고 여객의 안전 여부와 본선의 침수 등 피해 상황을 조사한다.

○ 상대선박을 호출하여 상대선박의 피해상황을 파악한다.

○ 선장은 즉시 위 상황을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게 보고한다.

○ 여객에게 동요하지 말 것과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줄 것을 방송하고 환자발생시 응급조치를 실시 한 후 환자를 안정시킨다.

○ 파공으로 인해 침수 발생시 쐐기 등으로 방수 조치를 한 후 퇴선 여부를 판단한다.

○ 피해정도가 적고 자력으로 회항이 가능하다면 관계기관에 위 내용을 보고하고 안전하게 가까운 항구로 회항한다.

○ 선장은 필요시 예인 등 지원을 요청하고 지원 요청을 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좌초시)

○ 선장은 즉시 엔진을 정지하고 비상경보 및 비상부서 배치 붙어를 발령하고 여객의 안전 여부와 본선의 침수 및 피해 상황을 조사한다.

○ 선장은 즉시 위 상황을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게 보고한다.

○ 여객에게 동요하지 말 것과 승무원의 지시에 따를 것을 방송하고 환자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한 후 환자를 안정시킨다.

○ 파공으로 침수 발생 시 쐐기 등으로 방수 조치한다.

○ 침수가 없고 자력으로 이초가 가능하다면 관계기관에 위 내용을 보고하고 자력 이초하여 가까운 항구로 가서 정박하고 피해상황을 조사한다.

○ 본선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경우 선장은 퇴선 혹은 예인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때는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 즉각 위 사실을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한다.

○ 지원요청을 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실행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 방법을 결정하고 이 사실을 선장에게 통보한다.

(전복시)

○ 선장은 전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모든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고 승무원의 지시를 따라 질서를 유지하여 정해진 소집 장소에 집합하게 한다.

○ 선장은 승무원에게 구명부기 등 구명설비를 투하하여 퇴선을 준비하게 하고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 및 인근선박에 구조를 요청한 후 퇴선을 명령한다.

○ 구조요청을 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실행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구조 방법을 결정하고 이 사실을 선장에게 통보한다.

○ 선장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로부터 통보받은 구조방법을 승무원 및 여객에게 통지하여 여객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승무원들은 여객의 신속하고 안전한 퇴선을 유도한다.

○ 여객전원이 구명부기 및 구명설비 등에 안전하게 퇴선한 것을 확인한 승무원들은 퇴선 시 소지해야 하는 지참물을 소지하고 마지막으로 퇴선한다.

○ 선장은 훈련 종료 후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한다.

[붙임10] 승객의 비상시 행동요령 〈개정2019.9.16〉

승객의 비상시 행동요령

○ 각종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여객선에서 훈련 및 비상 시 사용되는 신호는 다음과 같다.

- 비상배치신호 : ●●●●●●● ▬ (단음 7회후 장음 1회 후 비상배치 방송 : OO구역 OO발생 전원 비상배치)
- 비상해제신호 : ▬ ● ▬ ● ▬ ● (장음 1회 단음 1회 3회 연속반복)
- 퇴 선 신 호 : ▬▬▬▬ (연속음 약30초)

○ 화재 발생 시

- 화재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장소에 화재 발생이라고 소리를 질러(주위에 비상벨이 있는 경우 벨을 누른다.) 주위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승무원에게 알린다.
- 근처에 있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한다.
- 선내방송이나 승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 퇴선상황 발생 시

- 선내방송과 비상신호를 청취한다.
- 주위에 있는 구명조끼를 입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비상탈출구를 통하여 탈출한다.

[붙임11] 여객선의 장비 및 시설현황<개정2019.09.16.><개정2021.12.06.>

구분	연번	장비・시설	수량	설치장소
항해	1	레이더(FAR-2117)	1	브릿지
	2	레이더(FAR-2137S)	1	브릿지
	3	AIS(선박자동식별장치 FA-150)	1	브릿지
기관	1	주기관(MTU 16V 2000M72)	4	기관실
	2	발전기(CAT C4.4TA)	2	기관실
	3	기어박스(Reintjes Gearbox WLS 730)	4	기관실
	4	워터젯(Rolls-Royce KAMEWA A56S)	4	워터젯룸
	5	트림탭(MD-R-600-68)	1	워터젯룸
통신	1	SSB(FS-1570)	1	브릿지
	2	VHF(RT-5022)	2	브릿지
구명	1	성인용 구명조끼	473	좌석밑 외
	2	어린이용 구명조끼	45	1층 2층 선내보관
	3	구명부환(30M 구명줄 붙이)	4	비상소집장소
	4	구명부환(자기점화등)	2	선수
	5	구명부환(자기점화등 및 자기발연신호)원격투하	1	브릿지
	6	팽창식구명뗏목(150인용)	4	선수양현,선미양현
	7	해상탈출장비(250인용)	4	비상소집장소
	8	구조정	1	선미
	9	쌍방향 VHF 무선전화장치	3	브릿지
	10	레이다 트랜스폰더	2	브릿지
	11	E.P.I.R.B	1	브릿지
	12	구명줄발사기	1	브릿지
	13	유아용 구명조끼	11	1층 매점 보관
소화	1	CO2 소화기 5KG	3	기관2,선내1
	2	포말소화기(9L)	2	선내
	3	분말소화기(9KG)	2	선내
	4	물소화기(9L)	4	선내
	5	소화전	7	기관2,갑판5
	6	고정식 CO2 소화설비	1	선미

[붙임12] 선박 문서 보존연한

분류	관련 문서
영구 보존기록	ㅇ국적증서 ㅇ효력이 영속하는 각종 증서 ㅇ운항관리규정 관계 ㅇ항해일지 및 기관일지 ㅇ해양사고/준사고 보고서 ㅇ기타 선박운항과 관련한 기록으로 영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중요기록
5년 보존기록	ㅇ내부심사 및 부적합사항 관계 ㅇ선박검사 관계 ㅇ선박점검 관계 ㅇ해양오염방지 관계 ㅇ선내비상훈련에 관한 기록
3년 보존기록	ㅇ선원관리 관계 ㅇ선원자격 관계 ㅇ선원교육 관계
1년 보존기록	ㅇ항행통보 ㅇ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보고서
6개월 보존기록	ㅇ단순업무 처리에 관한 지시기록 ㅇ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조회 등을 위한 기록

[붙임13] 문서관리대장<개정 2023.02.27.>

선박 문서목록

문서파일 목록표(갑판부)

선명 : SEA STAR 5 작성일자 : 2023년 02월

파일번호	제 목	관리자	보존기간
SS5-D-01	선내문서 수신 발신대장	C/O	3년
SS5-D-02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2/O	1년
SS5-D-03	항해 계획서	2/O	1년
SS5-D-04	해도/수로서지 목록 및 항행통보 수급 현황	2/O	1년
SS5-D-05	선용품 청구서	C/O	3년
SS5-D-06	기부속 청구서	C/O	3년
SS5-D-07	수리 신청서	C/O	3년
SS5-D-08	구명/소화 설비 점검기록부(LSA/FFA)	C/O	3년
SS5-D-09	교육훈련 계획 및 시행표	C/O	1년
SS5-D-10	P.M.S 관련철	C/O	5년
SS5-D-11	DOCKING INDENT	C/O	5년
SS5-D-12	선박검사수검 관련철	C/O	5년
SS5-D-13	수신 공문(KOMSA,해수부)	2/O	3년
SS5-D-14	수신 공문(사내,해경,KR 등)	2/O	3년
SS5-D-15	정비 수리 완공서	C/O	3년
SS5-D-16	사고보고서	C/O	3년
SS5-D-17	특수항해 점검표	2/O	영구
SS5-D-18	특별관리 여객 명부	C/O	3년
SS5-D-19	당직 휴가 관련철	C/O	3년
SS5-D-20	선원 인수인계서	C/O	3년
SS5-D-21	INVENTORY	C/O	1년
SS5-D-22	위험작업 허가서	C/O,C/E	3년

문서파일 목록표(기관부)

선명 : SEA STAR 5 작성일자 : 2023년 02월

번호	파일번호	제 목	관리자	보존기간
1	SS5-E1	선내문서 수발신 대장	1/E	3년
2	SS5-E2	기부속청구서	1/E	3년
3	SS5-E3	선용품청구서	1/E	3년
4	SS5-E4	수리신청서	1/E	3년
5	SS5-E5	수리완공사양서	1/E	3년
6	SS5-E6	절연저항테스트	1/E	1년
7	SS5-E7	PMS(계획정비)	C/E	5년
8	SS5-E8	기기류 HISTORY CARD	C/E	영구
9	SS5-E9	SAFETY DEVICES CHECK REPORT	C/E	5년
10	SS5-E10	유류청구서/유류수급 인수증	C/E	5년
11	SS5-E11	유류 월간 소모량 보고서	C/E	5년
12	SS5-E12	OIL RECORD BOOK	C/E	5년
13	SS5-E13	폐유/오폐수 처리 결과서	1/E	5년
14	SS5-E14	DOCKING INDENT REPORT	1/E	5년
15	SS5-E15	기기류 사고/준사고/컨디션 보고서	C/E	5년

육상 문서목록

씨스포빌(주) 작성일자 : 2023년 2월

번호	파 일 번 호	문 서 목 록	비 고
1	SSPV-01	대내외 문서수발신 대장	
2	SSPV-02	대외 문서발송철	
3	SSPV-03	대외 문서수신철	
4	SSPV-04	대내 문서 수발신철	
5	SSPV-05	선원교육이수관련철	
6	SSPV-06	선박 선용품/선박수리	
7	SSPV-07	유류청구	
8	SSPV-08	사업계획변경철	
9	SSPV-09	어항시설점사용관련철	
10	SSPV-10	선박증서철	
11	SSPV-11	선박별 운항실적보고	
12	SSPV-12	도서민지원철	
13	SSPV-13	해상군후불	
14	SSPV-14	보훈청보조금청구	

□ 도면 및 서류

1. 도면

분류	제 목	매수	비 고
기본	1) GENERAL ARRANGEMENT	1	
	2) LINE PLAN	1	
	3) FREEBOARD PLAN	1	
	4) DRAFT MARK DIAGRAM	1	
	5) MAIN DECK ARRANGEMENT		
	6) MIDSHIP SECTION	1	
	7) SHELL EXPANSION	1	
	8) DAMAGE CONTROL PLAN	2	
의장	1) PAINT DETAILS	1	
	2) TOW LINE ARRANGEMENT	1	
	3) MAST CONSTRUCTION DETAILS	1	
	4) LIFE RAFT LAUNCHING MECHANISM	1	
	5) STRUCTURAL FIRE PROTECTION GENERAL LAYOUT	6	
	6) MAIN SPRINKLER BACKUP FIRE PUMP SCHEMATIC	3	
	7) FIRE MAIN-SCHEMATIC	1	
	8) LIFE SAVING & EVACUATION PLAN	3	
	9) DAVIT FIXING DETAILS & RESCUE BOAT CRADLE	1	
	10) FIRE CONTROL PLAN	2	
선체	1) BRIDGE DECK STRUCTURAL PLAN & CONTROL DECK & MAST DECK	1	
	2) MAIN DECK STRUCTURAL PLAN	1	
	3) STRUCTURAL PROFILE	2	
	4) DOCKING PLAN	2	
기관	1) EXHAUST WATER INJECTION POT MAIN ENGINES	1	
	2) F.W.D RIDE CONTROL ARRANGEMENT	1	
	3) FWD & AFT MOORING DECK ARRANGEMENT	1	
	4) HULL FOREFOOT DETAILS	1	
	5) E/R VENTILATION ARRANGEMENT SHEET	1	
	6) SCHEMATIC BILGE SYSTEM	1	

	7) WATER JET SYSTEM	1	
	8) SCHEMATIC BLACK/GREY WATER SYSTEM HULLS	1	
	9) AFT RIDE CONTROL MECH. DETAILS INTERCEPTOR & SKEGS	1	
	10) AFT RIDE CONTROL ARRANGEMENT	1	
	11) CO2 SYSTEM ARRANGEMENT MAIN ENGINE ROOM FWD & AFT	2	
	12) CO2 SYSTEM MAIN DECK STORAGE ROOM	1	
	13) SCHEMATIC CO2 SYSTEM	1	
	14) CO2 OPERATIONAL PROCEDURES	1	
전 기	1) HULL TRAY AND LIGHTS ELECTRICAL ARRANGEMENT	1	
	2) BRIDGE DECK SALOON ELECTRICAL	1	
	3) CABLING & ACCESSORIES - BRIDGE DECK	1	
	4) CABLING & ACCESSORIES - HULLS	1	
	5) CABLING & ACCESSORIES - MAIN DECK	1	
	6) MAIN DECK ELECTRICAL ARRANGEMENT	1	
	7) SWITCH BOARD & MAIN ENCLOSURES LOCATION PLAN	1	
	8) MAIN SWITCHBOARD B(STBD)	1	
	9) NAVIGATION EQUIPMENT LAYOUT	1	
	10) FIRE DETECTION SYSTEM	2	
	11) CABLE CONNECTION DIAGRAM	1	
	12) EM'CY POWER CONSUMPTION CALCULATION	1	

2.서류

연번	문서(명)	보존기간	관리자
1	운항관리규정	영구	선장
2	여객선 이력관리장부	영구	선장
3	복원성자료	영구	선장
4	선원 취업규칙 및 선원 근로계약서	영구	선장
5	직무별 업무	영구	선장
6	선내 조직도	영구	선장
7	작업 허가서	영구	선장
8	음주측정 기록부	영구	선장
9	내부심사	영구	선장
10	선박보험 증권 관련철	영구	선장

□ 증서목록

연번	문서(명)	보존기간	관리자
1	선박국적증서	영구	선장
2	선박총톤수 측정증명서(국내톤수증서)	영구	선장
3	선급증서	4년	선장
4	선박검사 증명서	4년	선장
5	해양오염방지증명서	4년	선장
6	승무원정원증서	영구	선장
7	무선국허가증	영구	선장
8	무선국 검사필증	1년	선장
9	EPIRB 검사증서	영구	선장
10	만재흘수선 지정서	영구	선장
11	소화설비 검사증서	영구	선장
12	구명설비 검사증서(Life raft)	영구	선장
13	구명설비 검사증서(Rescue boat)	영구	선장
14	구명설비 검사증서(Rescue boat Davit&Winch)	영구	선장
15	구명설비 검사증서(Chute, M.E.S)	영구	선장
16	Mill Test Cert.(Boat fall)	영구	선장
17	VDR performance test report	영구	선장
18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장	영구	선장
19	응급처치 담당자 임명장	영구	선장
20	Mill Test Cert.(Daehan Rope)	영구	선장

[붙임14] 내부심사절차서

1. 심사 구분
 가. 정기내부심사 : 연1회 이상 선박/안전관리부서에 정기적으로 실시
 나. 특별내부심사 : 특정사유 발생시 최고경영자 승인을 얻어 특정선박 또는 특정부서를 대상으로 비정기적으로 실시
2. 내부심사 주요 내용
 가. 회사 안전 목표/방침 이해 여부
 나.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적합성 및 상호 모순성 여부
 다. 문서 및 기록유지 관리상태, 부적합사항 등 시정조치 이행여부
 라. 교육훈련 실시 여부 등
3. 내부심사자 자격요건
 가. 당사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직급이 과장 이상인 자
 나. 선박안전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내부심사 계획 및 준비 절차
 가. 내부심사 계획 수립 및 통보
  1) 안전관리책임자는 당해연도 내부심사 실시 1개월 전 내부심사 계획을 수립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심사대상에게 심사 실시 10일전까지 통보한다.
  2) 내부심사 계획서에는 심사목적, 심사종류, 심사대상 심사범위, 심사일정, 심사(심사원) 구성, 내부심사 점검표 기타 참고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나. 심사수행
  1) 시작회의
   심사팀장은 심사 시작 전 심사자, 피심사자를 참석시켜
   ○ 심사의 목적 및 범위, 심사방법, 심사자 소개 심사절차 및 일정
   ○ 이전심사의 미결사항, 피심사부서 심사 담당자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2) 심사수행
   ○ 심사자는 내부심사 점검표 및 내부심사 주요내용에 대하여 내부심사를 수행한다.
   ○ 심사대상 또는 선박의 업무진행에는 최소의 영향을 주도록 심사한다.

○ 발견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피심사 담당자의 확인 서명을 받고 피 심사부서 담당자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 반영한다.

○ 피심사부서장 또는 선장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 및 조치기한을 심사팀장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3) 종료회의

심사팀장은 피심사부서 해당직원을 참석시켜 아래의 심사결과를 설명 협의한다.

○ 심사결과의 종합평가, 부적합사항 또는 권고사항 확인 및 설명

○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절차 및 조치시한 확인 및 필요시 재조정

○ 운항관리규정 개선에 필요한 기타 필요한 사항

5. 심사결과

가. 결과보고 절차

안전관리책임자는 내부심사 점검표를 작성 그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다.

나. 시정조치 및 사후관리 절차

1) 해당부서에서는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합의된 기한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한 후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책임자는 시정조치결과보고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직접 확인하고 최고경영자에게 보고·승인을 득한 후 부적합보고서를 해제한다.

6. 최고경영자는 내부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의 문서화된 운항관리규정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년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붙임15] 내부심사 점검표 및 보고서

<table>
<tr><td colspan="3" rowspan="2">내 부 심 사 부 적 합 사 항 보 고 서</td><td>부적합번호</td><td colspan="2">(부)</td></tr>
<tr><td>발행일자</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3">□내부심사 □고객불만사항 □자체발행</td><td>대상부서</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6">※ 부적합사항 □중부적합 □경부적합 □권고사항
1. 관련문서(근거)
2. 부적합내용</td></tr>
<tr><td colspan="2">해당부서장</td><td colspan="2">심사자(발행자)</td><td colspan="2">심시팀장</td></tr>
<tr><td colspan="4">※부적합사항 검토 및 시정조치 방안</td><td colspan="2">조치기한</td></tr>
<tr><td colspan="2">시정조치부서</td><td colspan="2">검토(심사)일</td><td colspan="2">검토(심사)자</td></tr>
<tr><td colspan="2">※시정조치내용</td><td colspan="2">시정조치일자</td><td colspan="2">시정조치부서장</td></tr>
<tr><td colspan="4">※시정조치확인결과</td><td colspan="2">□종결승인 □재조치 □조건부승인</td></tr>
<tr><td colspan="6">▶시정조치 재시행시 신규번호:(부) - - - 일련번호부여</td></tr>
<tr><td>확인일자</td><td></td><td>확인(승인)자</td><td></td><td>재조치기한</td><td></td></tr>
<tr><td colspan="4">※유효성/효과 검토 결과</td><td colspan="2">종결일자: 최종확인자:</td></tr>
</table>

내 부 심 사 점 검 표			심사대상		
			심사종류	년도(□정기 □특별)	
심사목적			심사기간		
운항관리규정 항목	부적합	권고	심사자 명단 및 심사일정		
1.안전관리 목표 및 방침			책임심사자		
2.안전관리 조직					
3.출항 또는 운항정지 조건					
4.운항기준도					
5.선장의 보고사항			일반심사자		
6.위험물 취급					
7.여객 승하선 및 화물 적재					
8.선박 및 수송시설의 점검정비					
9.해양사고등 사고발생시 조치			부적합(총 건)		
10.여객준수사항의 전달			구분	중부적합(○)	건
11.안전운항 및 해양사고방지 교육				경부적합(△)	건
12.문서 및 자료관리				권고사항	건
13.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원인별분석	절차내용 미흡	건
14.내부심사				절차 불이행	건
15.선박소유자의 확인·검토·평가				업무이해 미흡	건
합 계				시정조치 미흡	건
				증거(기록)미흡	건
				지원 미흡	건
심사결과 요 약 및 분석					
유첨	1.부적합사항 보고서 부				
작 성 일	작 성 자	검 토 자	확 인 자		
주) 작성 → 책임심사자, 검토자 → 안전관리책임자, 확인자 → 사장					

[붙임16] 여객선 정기 점검표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16. 12. 8.>

여객선 정기 점검표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 관련)

※ 점검사항의 결과란은 양호는 ○, 보통은 △, 불량은 ×로 표시합니다.

선명(선박번호)	( )	기관마력	hp
항로 및 항해구역		진수연월일	. . .

점검사항

구분	내용	결과	구분	내용	결과
선체	선체 및 도장 상태		구명설비	구명기구・신호장치 상태	
	흘수 상태			진수장치 상태	
기관	기관정비 상태		화물	위험물 적재장소의 관리 상태	
통신	통신기 작동 상태		일지기록	비상훈련의 이행여부	
				비상시의 임무숙지 상태	
항해용구	항해계기 정비 상태			항해일지의 기록여부	
	조타설비 상태		보안시설	비상용 경보장치 상태	
	닻・쇠사슬 및 로프 상태				
	속구(屬具) 및 비품 비치 상태			보안・청원경찰의 승선 유무	
소방설비	소화 및 비상펌프 정비 상태		위생설비 기타	여객선의 청결 상태	
	소화전・호스・소화기 상태			화장실의 위생 상태	
	소방수통 상태			방송・난방・통풍 시설	
육상시설	육상 승선・하선 시설		기타	운항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종선의 운영 상태			선원의 처우 상태	

위 지적사항의 시정여부

지적사항	시정여부	지적사항	시정여부

이번의 지적사항	시정기한

점검일시 : 년 월 일

점검 및 입회자

선 장 ㊞, 사업자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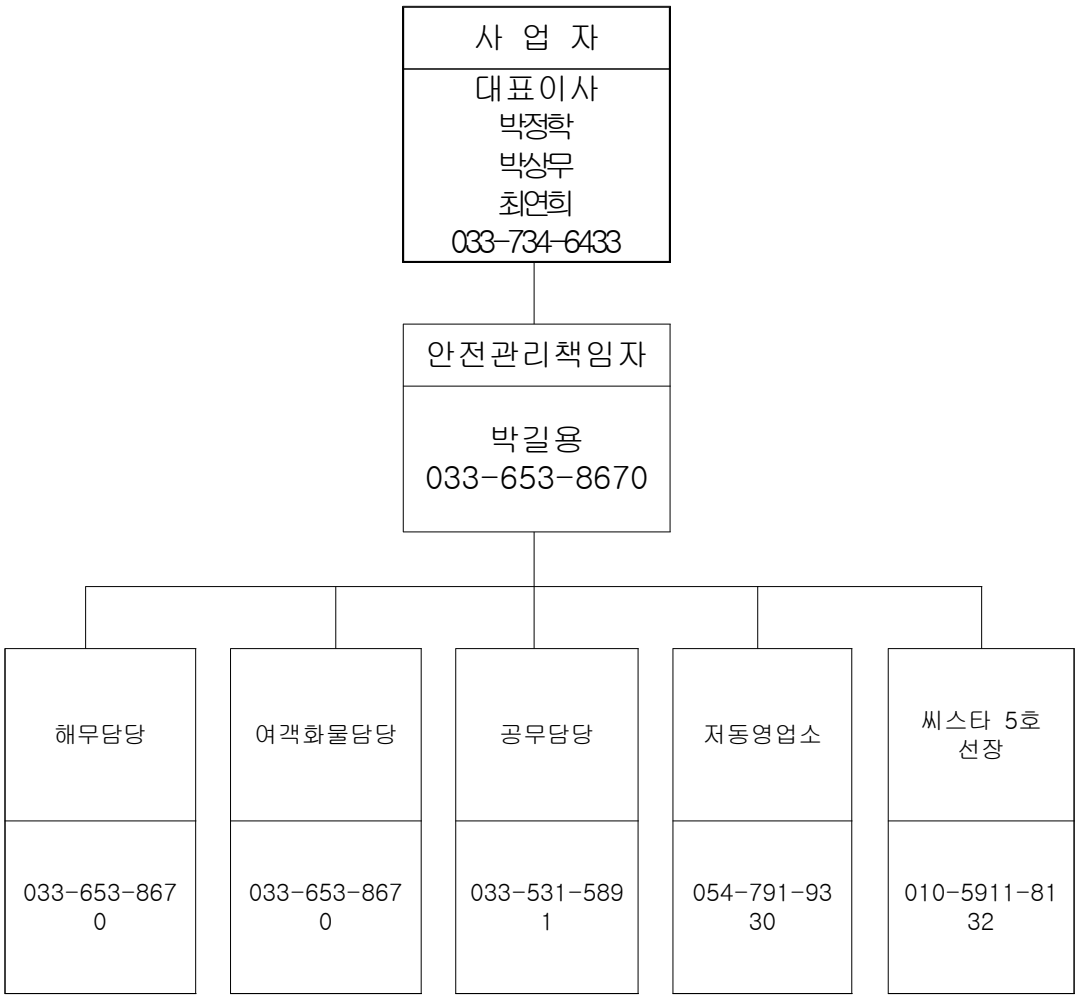
[붙임17] 안전관리조직도<신설2020.11.25><개정2021.12.06>